

종합감사

감 사 보 고 서

－ 해남군 정기종합감사 －

2023. 6.



전라남도
JeollaNamdo

(감사관실)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해남군은 「지방자치법」 제185조·제190조에 따른 道 정기종합감사를 '20년 2월 이후 받지 아니하여 기관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
- 「조직·인사」, 「예산운영」 및 「주요 사업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기관운영의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 제고에 기여

2. 감사대상 및 범위

- '20년 2월부터 '23년 1월까지 해남군 본청, 직·사업소, 읍·면에서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중점

- 국·도정 등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 조직·인사관리, 인·허가 및 민원처리의 적정성
-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와 예산낭비 사례, 소극행정
-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 관련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4. 감사기간 및 인원

- '23. 3. 2.부터 3. 10.까지 감사인원 17명을 투입하여 감사 실시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1. 일반현황

('23. 1. 31. 기준)

인 구	면 적	조 직
65,831명 (전남의 3.6%)	1,043.8km ² (전남의 8.4%)	○ 2실, 16과, 2직속기관, 5사업소, 14읍면, 1의회 ○ 행정구역 : 1읍 13면

※ 직속기관(2) :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 사 업 소(5) : 공룡박물관, 스포츠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축산사업소, 기후변화대응단

2. 정·현원 현황

(단위 : 명 / '23. 1. 31. 기준)

구분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지도직
정원	880	1	834	-	45
현원	875	1	837	-	37
증감	△5	-	3	-	△8

3.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 '23. 1. 31. 기준)

구분	2021	2022		2023	
	본 예산	본예산		본예산	
		예산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예산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계	7,869	8,399	530 (6.7)	8,721	322 (3.8)
일반 회계	7,505	7,955	450 (6.0)	8,369	414 (5.2)
특별 회계	364	444	80 (22.0)	352	△92 (△20.7)

구분	2021	2022		2023. 1월	
	최종 예산	최종예산		최종예산	
		예산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예산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계	10,240	11,995	1,755 (17.1)	8,721	△3,274 (△27.3)
일반 회계	9,855	11,529	1,674 (17.0)	8,369	△3,160 (27.4)
특별 회계	385	466	81 (21.0)	352	△114 (△24.5)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 총 64건의 위법·부당사항, 모범사례를 확인

(단위 : 건/ 백만원)

총계 (가+나+다+라)	신분상 처분			행정상 처분(건)												모범 사례 (다)	사전 컨설 팅 (라)	
	합계 (가)	징계	훈계	합계 (나= A+B+C +D+E+F)	시 정							주의 (B)	개선 (C)	권고 (D)	통보 (E)			경고 (F)
					계 (A =a+b)	재정상 처분(건/백만원)					재정상 처분외 시정 (b)							
					소계 (a)	회수	부과 추징	감액	기타									
64	19 (31명)	2 (3명)	17 (28명)	43	21 (1,409)	13 (1,409)	7 (640)	3 (693)	1 (46)	2 (30)	8	21	1	-	-	-	2	-

-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 및 처분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

▶ 계약 분야

-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 처리 시 제안서의 정성적 평가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과소 운영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경징계 및 훈계,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 요구

▶ 세입·세출 분야

-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6억 986만원을 세입 조치하도록 시정 요구

▶ 환경 분야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가(94건) 만료되었는데도 사전안내 미실시 및 원상복구 명령을 미실시하여 연장허가 없이 지하수를 사용하게 하고, 수질검사대상 1,532개소가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하게 한 관련자 경징계 및 훈계 요구,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 요구

▶ 보조금 분야

- 해양수산사업 국고보조금 등 집행잔액 및 이자액 4억 6,123만원을 미반납한 사례에 대하여 반납 조치하도록 시정 요구

2. 처분요구 요약

① 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 인사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총무과)은 '20년 2월부터 '23년 1월까지 15명의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 5급 이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2차례씩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면서 자격증 가산점 평정 업무 등 인사업무 추진

1.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 시험위원 위촉 부적정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공직자의 채용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시험위원은 최소 5명 이상으로 하되, 이 중 2명 이상(4명 이상)은 외부전문가(교수, 다른 지자체 공무원 등)로 구성, 임용시험 단계별(서류, 면접)로 시험위원을 달리 위촉하도록 규정
 - 또한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근무경험 관계 등이 있는 자는 제척하거나 기피·회피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총무과)은 '20. 00. 00. 00000 일반임기제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시험위원은 최소 5명 이상이고 이 중 외부위원이 4명 이상이어야 하는데도, 부당하게 외부위원 3명, 내부위원 1명 총 4명으로만 구성한 채 평가 추진
 - 또한 '20. 00. 00. 00000 일반임기제 공무원 면접시험에서는 시험위원인 00과 응시자인 000이 함께 근무한 경험 관계*가 있는데도 제척하거나 기피·회피하지 않은 채 시험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 추진
- * 근무한 경험 관계 : 0년 0개월('14. 0.~'16. 0.) 동안 해남군 0000과에서 함께 근무
- 한편 공정채용 가이드북('19. 인사처)에 경력경쟁채용 시 서류전형 시험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이 중 1명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안내
 - 그런데 위 군(총무과)은 '20년 2월부터 '22년 12월까지 14회에 걸쳐 임기제 공무원 15명을 채용하면서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외부위원으로 한 번도 구성하지 않은 채, 내부직원 2명으로만 구성하여 평가 추진

2. 자격증 가산점 평정 부당 부여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에 자격증 소지로 필기시험 없이 임용된 자,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한 특수직급에 임용된 자에게는 자격증 가산점을 미부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총무과)은 '20년 2월부터 '23년 1월까지 6회의 근무성적 평정 시 자격증 소지로 필기시험 없이 임용된 지방○○9급 ○○○ 등 70명에 대하여 자격증 가산점 0.5점을 최대 6회까지 부당하게 부여

3. 6급 승진임용을 위한 결원산정 부적정

-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등에 지자체장은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고,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
- 그런데 위 군(총무과)은 '20년 1월부터 '23년 1월까지 6급으로의 승진 인사 시 5급 승진후보자로 의결된 6급 공무원을 6급 결원으로 부적정하게 산정, 정당한 6급 승진 가능 인원 53명보다 18명 많은 71명을 승진 임용

승진의결일	6급 정원 (가)	6급 현원			6급 결원			승진 의결	비고 (과원 해소일)
		실제현원 (나=A-B)	현원 (A)	근속승진 현원(B)	결원 (가-나)	추가 요인	총 결원		
계							△53	71	초과 18
2019.00.00.	191	183	230	47	△8	△6	△14	17	초과 3 (2020.00.00.)
2020.00.00.	193	190	243	53	△3	△7	△10	13	초과 3 (2020.00.00.)
2020.00.00.	195	190	240	50	△5	△7	△12	16	초과 4 (2021.00.00.)
2021.00.00.	195	193	247	54	△2	△4	△6	7	초과 1 (2021.00.00.)
2021.00.00.	195	191	245	54	△4	△3	△7	11	초과 4 (2022.00.00.)
2022.00.00.	196	194	246	52	△2	△2	△4	7	초과 3 (2023.00.00.)

- 그로 인하여 다른 7급 직원들이 정당하게 다음 6급 승진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었고, 5급 승진후보자로 선정된 공무원이 실제 승진임용 되기까지 최대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6급에서 과원 발생하는 결과 초래

- ☞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업무(1.)와 자격증 가산점 평정 부당 부여 등 인사업무(2. 3.) 모두와 관련된 前 담당자 1명 **“훈계요구”**
- ☞ 앞으로 관련 부서에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및 자격증 가산점 평정, 승진 임용을 위한 결원 산정 등 인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②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건설도시과)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전문성, 기술성 등이 필요한 용역 계약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를 추진

1. 제안서평가위원회 정성적 평가 업무 처리 부적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등에 계약담당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 등 필요한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
- 또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에 계약담당자는 제안서의 평가를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찰공고에 평가방법을 명시하도록 규정
- 그리고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건설도시과)은 '22. 0. 00. 실시한 해남군 ○○○○○○ 운영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실시하면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평가위원별이 아닌, 평가항목별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 평균하는 등 업무 처리 부적정

(단위 : 점)

구분	해남군 제안서 평가 결과		정당한 제안서 평가 결과	
	(○)○○○○○○○○○○	(○)○○○○○○○○○□	(○)○○○○○○○○○○	(○)○○○○○○○○○□
합계	91.1 (1순위)	90.9 (2순위)	91.0 (2순위)	91.24 (1순위)
정량적 평가	19.8	19.1	19.8	19.1
정성적 평가	61.3	62.6	61.2	62.9
가격 평가	10.0	9.2	10.0	9.24

- 그로 인하여 정당한 제안서 평가 결과 협상 순위 1순위인 (○)○○○○○○○○○□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2.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부적정

-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에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정량적 평가를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은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건설도시과)은 '22. 0. 00. 해남군 ○○○○ ○○○○ ○○○○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실시하면서 평가위원 7인 중 6인만 참석하였는데도 예비평가위원을 소집하지 않고 6인으로만 부적정하게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의 정성적 평가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과소 운영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前 담당자 1명 “경징계요구” 및 現 담당 팀장 1명 “훈계요구”

☞ 앞으로 관련 부서에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 추진 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③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해남군(총무과)은 '20년 2월부터 '23년 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매년 상·하반기 '○○○ ○○행사'를 추진하면서 전 직원에게 해남사랑상품권 및 기념품을 제공
-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 그런데 위 군(총무과)은 총 6회 ○○○ ○○행사를 추진하면서 전 직원에게 포상금(2억 9,157만원)으로 해남사랑상품권 구입, 사무관리비(8,649만원)로 기념품 구입 등 총 3억 7,806만원의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부적정 사용

(단위 : 명, 천원)

연도	추진시기	대상자	소요예산	지원물품	1인당 제공액	(부적정) 예산과목
계	6회	전 직원	378,060			
2022	10.00.~12.00.	1,440	43,200	해남사랑상품권	30	포상금
	04.00.~06.00.	1,399	41,970	해남사랑상품권	30	포상금
			41,970	손수건, 텀블러	30	사무관리비
2021	10.00.~12.00.	1,484	44,520	해남사랑상품권	30	포상금
	03.00.~06.00.	1,374	44,520	우산 등	30	사무관리비
			41,220	해남사랑상품권	30	포상금
2020	10.00.~11.00.	1,394	83,640	해남사랑상품권	60	포상금
	03.00.~06.00.	1,234	37,020	해남사랑상품권	30	포상금

- ☞ 업무추진비성 경비를 포상금과 사무관리비 등 세출예산 목적 외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前 담당자 1명 “훈계요구”
- ☞ 앞으로 관련 부서에 공직자 화합행사 등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를 진행할 경우 세출예산 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로 편성·집행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4 ○○○○○○ 민간보조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은 '20년 2월부터 '23년 1월까지 ○○○○ ○○○○○○ 시범사업 등 62개 보조사업에 115억원을 지원하여 시설·기계장비 등을 구축

1. 농업용 기계장비 구입 계약 부적정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에 보조사업자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은 16개 보조사업에서 8억 5,000만원 상당의 275개 기계장비 등 물품을 보조사업자가 교부조건을 위반하여 수의계약을 통해 직접구매 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그로 인하여 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구매하였을 경우 1억 2백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하는 결과 초래

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처리 부적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6조 등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1조에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24조에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 수집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농촌지원과)은 ○○○○ ○○○○ ○○○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였고, 선정이 완료되어 그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는데도 파기하지 않고 '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문서 편철하여 보관

* ('22. 2. 00.) 개인정보 수집, ('22. 3. 00.) 대상자 선정

- 또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만 받고 고유식별정보 수집·동의를 받지 않았는데도 위와 같은 날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제출받아 '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같은 방법으로 보관

- ☞ 보조사업자가 농업용 기계장비를 직접 구매하도록 방치한 前·現 업무 담당자 총 5명 **“훈계요구”**
- ☞ 사업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어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시정요구”**
- ☞ 앞으로 관련 부서에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처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5 현장감독공무원 피복비 집행 부적정

- 위 군(공룡박물관 등 14개 부서)은 '20년 2월부터 '23년 1월까지 시설부대비 (401-03)로 피복비 90건 6,222만원 집행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1항에 피복비 지급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한다고 규정
- 또한 피복비를 집행하는 경우 공사기간(동일기간 다수현장 감독자에 대한 중복 지급 제한), 구매의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하고, 고가의 등산용품 등을 금지한다고 규정
 - 그런데 위 군(해남읍 등 14개 부서)은 감독공무원으로 임명되지 않은 25명에게 최소 1건 20만원에서 최대 19건 808만원까지 총 79건 5,405만원의 피복을 부적정하게 구입하여 지급
 - 또한 위 지출 건 중 준공일이 도래하거나 공사 기간이 아닌 시기에 15명에게 최소 1건 20만원에서 최대 16건 588만원까지 총 44건 2,586만원의 피복을 부적정하게 구입하여 지급

- ☞ 피복비를 준공일이 도래하거나 공사 기간이 아닌 시기에 총 200만원 이상 부적정하게 집행한 前 담당자 총 3명 “**훈계요구**”
- ☞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기간, 구매의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시설부대비를 합리적으로 집행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6 자동차 관련 행정처분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안전교통과)은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을 통하여 화물·여객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의심신고 사항을 통보받아 조사 및 행정처분을 추진

1. 유가보조금 의심신고 업무처리 부적정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22조 등에 관할관청은 반기별로 운송사업자 등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발생 여부를 조사하고, 조치 결과를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에 실시간으로 입력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지침 제23조 등에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적발된 운송사업자나 화물차주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형사고발 조치 등 행정상 제재를 하도록 규정
-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관청에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거래를 유형별로 자동 추출하여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공
 - 그런데 위 군(안전교통과)은 '20년 2월부터 '23년 1월까지 유가보조금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41차례에 걸쳐 496건의 의심신고를 제공 받았으나, 조사나 행정상 제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채 방치

2.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등 과태료 부과 소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에 군수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보유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군수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에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교통과)은 '20년 2월부터 '23년 1월까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해 53건 326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누락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실태조사 및 행정상 제재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한 前 담당 팀장, 담당자 "훈계요구"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 53건 326만원을 부과하도록 "시정요구"

7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해양수산물과)은 '19년부터 '22년까지 수산업발전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수산관계 법령 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추진

1.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부적정

-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등에 최근 2년 내 수산관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정지처분 기간을 합산하여 행정처분하도록 규정
- 같은 규칙 행정처분요구기준 II항 2호 등에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구역 외의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 1차 위반은 30일 어업정지, 2차 위반은 45일 어업정지 처분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해양수산물과)은 '20. 0. 00.과 '20. 0. 00. ○○○○ ○○로 적발된 '○○○'에 대해 어업정지 60일을 처분하여야 하는데도 1차 위반 30일, 2차 위반 45일 총 75일을 어업정지 처분하여 15일 과다 처분

2. 해기사면허 행정처분 요구 부적정

- 「수산업법」 제71조 등에 행정관청은 수산업법 등을 위반한 때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물청장에게 해기사면허의 취소·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
- 또한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규칙」 제11조에 행정청은 수산관계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어업 등 행정처분을 하고 관할 지방해양수산물청장에게 해기사 행정처분 요구를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해양수산물과)은 '20. 00. 0. ○○○○(○○ ○○) 규정을 위반한 '○○○'에 대하여 어업정지(30일) 행정처분을 하면서 목포지방해양수산물청에게 해기사면허의 정지 등 행정처분 미요구

☞ 행정처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前 담당 팀장 1명 “훈계요구”

☞ 앞으로 해기사 행정처분 요구 등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8 석유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및 고발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경제산업과)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를 통보받아 「석유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업무를 추진

1. 석유판매업자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누락

- 「석유사업법」 제38조 등에 석유판매업자는 매주 거래상황기록부를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하여야 하고, 미보고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등에 ‘주 단위 보고 미이행’ 과태료 부과는 최근 6개월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여 1차 경고,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4차 15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
 -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은 해남군 소재 주유소 ‘주간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미보고 현황’이 발생 시 공문으로 해남군에 통보
 - 그런데 위 군(경제산업과)은 ‘21. 0. 00.부터 ‘22. 0. 00.까지 ○○○○주유소 등 4개소 석유판매업자의 주간 거래상황 미보고를 통보받고도 ‘23. 0. 00. 감사일 현재까지 4건 행정처분*(경고) 및 1건 과태료**(50만원) 부과 누락
- *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 / ** ○○○○주유소

2. 석유판매업자 위반사업자 고발 조치 미실시

-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도록 규정
- 또한 「석유사업법」 제39조 등에 석유판매업자는 법령상 허용된 영업범위나 방법을 위반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산업과)은 ‘20. 0. 00.부터 같은 해 0. 00.까지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사법처분에 해당되는 위반내역을 통보받았는데도 ‘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주유소 등 5건을 고발하지 않은 채 방치

- ☞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석유판매업자에게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누락하여 부적정하게 처리한 前 담당 팀장 “**훈계요구**”
- ☞ 앞으로 관련 부서에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위반내용이 통보되면 「석유사업법」에 해당하는 행정 및 사법처분을 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9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 부적정

- 위 군(건설도시과)은 군민들이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 개발·이용을 인·허가하고 수질검사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지하수 사후관리 업무를 추진

* 해남군은 2020년 종합감사에서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허가 및 사후관리 부적정으로 훈계 및 시정요구 처분을 받음

1.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연장허가 업무처리 부적정

- 「지하수법」 제7조 등에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연장하려면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연장허가 신청하도록 규정

* 지하수 개발·이용으로 주변 지하수 고갈과 오염 예측하여 사전 방지하기 위한 조사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군수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연장절차, 허가만료 사항을 미리 알리도록 규정

- 그리고 같은 법 제15조에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일정 기간을 두어 원상복구 명령을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건설도시과)은 '17. 0. 0.부터 '23. 0. 00.까지 '○○○청 ○○용수' 등 94건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가 만료되었는데도 '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연장절차 등 사전안내 미실시 및 원상복구 명령을 미실시 한 채 방치

- 그로 인하여 허가 만료된 지하수 개발·이용이 지하수영향조사 없이 지하수 사용을 무분별하게 운영하게 되는 결과 초래

2. 지하수 수질검사 관리 소홀

- 「지하수법」 제20조에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수질검사를 검사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하수 검사전문기관* 검사를 받아야 하고, 군수는 수질 기준 부적합 시 지하수의 이용 중지 또는 수질개선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

* 지하수조사전문기관, 먹는물관리법 검사기관, 수도법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등

< 지하수 수질검사 검사 주기 >

용도	구분	수질검사 주기
음용수	모든시설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인 경우 : 2년마다 1회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인 경우 : 3년마다 1회
생활용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3년마다 1회
공업용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3년마다 1회
농업·어업용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	3년마다 1회

- 또한 같은 법 제39조에 지하수 관련 수질검사 대상자가 수질검사 미 실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건설도시과)은 '20년 2월부터 '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수질검사대상 1,532개소가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데도 과태료를 미부과

- ☞ 지하수 인허가 개발·이용 연장허가 업무 및 수질 오염검사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前·現 담당 팀장 “경징계요구” 및 前 담당자 3명 “훈계요구”
- ☞ 앞으로 관련 부서에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허가를 받은 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 미리 안내를 실시하여 지하수 허가를 연장하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하도록 하고,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대상이 수질검사를 주기에 맞게 실시되도록 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10 사립미술관 운영 보조금 관리업무 부적정

- 위 군(문화예술과)은 문화·예술의 발전, 군민의 문화 향유를 위하여 '20년부터 '22년까지 ○○미술관에 운영 보조금으로 총 6,600만원*을 지원

* 매년 2,200만원(도비 660만원, 군비 1,540만원)씩 총 3년간 6,600만원을 지원

1. ○○미술관 보조금 정산 부적정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에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 심사하도록 규정
-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VI.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편에 군수는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정·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 그리고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예술과)은 '20년과 '21년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하면서 교부결정시 제출된 학예사 명단(○○○, ○○○)과 다른 직원(○○○, 학예사 자격증 없음)이 근무하였는데도 부적정 정산

2. 보조금 반납업무 처리 부적정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V.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편 등에 지방보조금은 보조결정 통지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군수의 사전 사용 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전할 수 없고, 위반 시 해당 금액만큼 환수하도록 규정
- 또한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에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사업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도록 규정
- 한편 해남군이 '20. 0. 00. 보조사업자인 ○○미술관에 대하여 '20년 사립미술관 운영 보조금(2,200만원)을 교부 결정

- 그런데 위 군(문화예술과)은 ○○미술관이 '20. 0. 00. 440만원을 집행하면서 '20. 0월분 인건비 220만원을 부당 집행하였는데도 환수 조치 없이 정산

☞ 보조금 정산 및 반납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前 팀장(2명) “**훈계요구**”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부적정 집행한 사업비 220만원을 환수하도록 “**시정요구**”

11 지방재정 투자심사 미실시 등 업무 처리 부적정

1.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한 폐교 매입 전남도 투자심사 미실시

- 위 군(문화예술과)은 '19년 6월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101.6억원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관내 폐교 3개소를 매입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등에 군수는 신규 투자사업의 총사업비 (보상·경비 등 포함)가 60억원 이상이면 예산 편성 전 도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
- 또한 「투자심사 매뉴얼」에 시설물의 기능이 상호 연결되거나 연계성이 있어 사업계획을 1건으로 수립한 경우에는 총사업비 대상 심사기관에 맞게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예술과)은 '19년 6월 사업계획을 총사업비 101.6억원으로 수립하면서 전남도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같은 해 7월 군의회에 공유 재산관리계획만 승인 받아 '20년 3월까지 폐교 3개소를 30억원으로 매입
- 또한 이번 감사기간 중 폐교 활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20년 3월부터 '23년 3월 감사일 현재까지 폐교 3개소를 3년 동안 활용하지 못한 채 방치

		
○○면 ○○교(9억원) ○○○ ○○ ○○계획 용역 추진 예정	○○면 ○○초(13억원)	○○○○교 ○○교(8억원)
사업계획 및 활용방안 구상 중		

2. 해남군 관내 공영주차장 자체 투자심사 미실시

- 위 군(안전교통과)은 '20년 2월부터 '23년 1월까지 관내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152.6억원으로 공영주차장 10개소를 조성하였거나 추진 중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등에 군수는 신규 투자사업의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이면 예산 편성 전 군 자체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
 - 또한 「투자심사 매뉴얼」에 시설물의 기능이 상호 연결되거나 연계성이 있어 사업계획을 1건으로 수립한 경우에는 총사업비 대상 심사기관에 맞게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교통과)은 '18년 10월부터 '23년 1월까지 7건* 사업계획(10개소)을 수립하면서 사업기능이 비슷하여 건별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이므로 자체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3건**에 대해 투자심사 미실시
- * ('19년) 3건, ('21년) 2건, ('22년) 2건
- ** ('18년 10월) 41.5억원, ('19년 1월) 35.3억원, ('19년 10월) 57.3억원
- 또한, 공영주차장 10개소 중 개소당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4개소만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6개소는 건별 사업계획 또는 개소당 사업비가 20억원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군 자체 투자심사를 미실시

☞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미실시한 문화예술과 前 담당 과장 및 안전교통과 前 담당 과장 총 2명 **“훈계요구”**

☞ 앞으로 관련 부서에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 등을 준수하여 투자심사를 실시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12 공사 구간 내 사용 협의 없이 국·공유지 무단 훼손

- 위 군(안전교통과 등 2개 부서)은 '20년 2월부터 '23년 1월까지 국·공유지가 포함된 도로·하천 등 공사 총 29건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
- 「국토계획법」 제65조 등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국·공유지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도로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한 인·허가 등을 미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
- 또한 「국유재산법」 제7조 등에 공사 구간 내 편입되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사용 허가 등을 득하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교통과 등)은 '20년 2월부터 '23년 1월까지 29건의 도로·하천 공사구간 내 편입된 국·공유지 263필지 18만 1,063㎡를 특별한 사유 없이 단 1건의 공사도 유상 매입 또는 무상귀속 협의 없이 공사를 시행
- 그로 인하여 29건의 공사의 경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4년 5개월 동안 국·공유지(263필지 18만 1,063㎡)를 무단 훼손·사용하는 등 국·공유재산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 ☞ 공사 구간 내 국·공유지 사전 협의 없이 무단 사용한 안전교통과 前 담당 과장 1명 “**훈계요구**”
- ☞ 무단 사용 중인 국·공유지에 대해 유상 매입 또는 무상귀속 절차를 협의 하도록 “**시정요구**”

13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해양수산과 등 20개 부서)은 '20년 2월부터 '23년 1월까지 1억원 이상 공사 618건을 추진하여 준공 또는 공사 중
- 「문화재보호법」 제12조에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의 역사문화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35조 등에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산림공원과)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시행한 2020년 ○○○○ ○○○○사업 등 2건에 대하여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및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

* 명승(○○○ ○○○ 일원), 국가민속문화재(○○○ 고택)

- ☞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및 현상변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前 업무 담당자 1명 “**훈계요구**”
- ☞ 앞으로 관련 부서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및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주의요구**”

14 개발행위 사후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건축허가과)은 '20년 2월부터 '23년 1월까지 「국토계획법」에 따라 단독주택 부지 조성 등 6,046건의 개발행위 허가 관련 업무 추진 중
- 「국토계획법」 제133조 등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내에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허가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허가기간 연장 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건축허가과)은 '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개발행위 허가기간이 짧게는 10일, 길게는 958일이 경과된 38건에 대하여 허가기간 연장 또는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 미이행
- 「국토계획법」 제60조 등에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는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예치한 이행보증증권의 보증기간이 만료될 경우 재예치 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건축허가과)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예치한 이행보증증권 중 보증기한이 만료된 2건, 3억 7,228만원의 보증기한이 짧게는 170일, 길게는 295일이 경과되었는데도 재예치 등의 행정조치를 미이행

☞ 개발행위 사후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現 담당 팀장 1명 **“훈계요구”**

☞ 개발행위 허가기간이 경과된 38건에 대해서는 허가기간 연장 또는 취소 등 행정 조치하고, 이행보증금 보증기한이 만료된 2건, 3억 7,228만원에 대해 보증기한을 연장하여 재예치하도록 **“시정요구”**

15 옥외광고물 사후관리 부적정

- 위 군(건설도시과)은 '20년 2월부터 '23년 1월까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161건 등 관련 업무 추진
- 「옥외광고물법」 제3조 등에 광고물 표시 기간 연장신청 대상 광고물 관리자 등에게 표시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미리 알려 연장 신청하도록 하고,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건설도시과)은 '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표시기간이 만료된 옥외광고물 관리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총 8회 알렸으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무단 사용 중인 758건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미조치

☞ 옥외광고물 사후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現 담당 팀장 1명 “**훈계요구**”

☞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관리자 등에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절차를 이행하도록 “**시정요구**”

16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건설도시과)은 '20년 2월부터 '23년 1월까지 230개소의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점검·관리하고, 56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 등을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건설도시과)은 '23. 3. 10. 감사일 현재 ○○ ○○지구 ○○○ 정비사업 등 6건은 구조물 되메우기다짐 시 플레이트콤팩트 다짐을 시행하지 않는 등으로 2,073만원 회수가 필요한데도 미조치

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미승인 및 안전점검 소홀

- 「농어촌정비법」 제9조 등에 군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변경하려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시설의 정기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건설도시과)은 '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정비사업 중 2건은 도지사 변경승인 없이 공사를 추진하였고, 828개소에 대한 분기별 정기점검은 총 9,578회 중 5,287회(55.2%) 미실시

3. '20년 도 종합감사 및 '22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등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
- '20년 도 종합감사 및 '22년 정부합동감사 시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미수립'에 대해 '시정·주의요구'를 처분
- 그런데 위 군(건설도시과)은 '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5개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매년 수립해야 할 안전관리시행계획을 '20년부터 '23년까지 단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음

- ☞ '20년 도 종합감사 및 '22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現 담당자 1명 "훈계요구"
-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과다 계상된 2,073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 ☞ 앞으로 관련 부서에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17 하수도 정비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20년 2월부터 '23년 1월까지 ○○ ○○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15건과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 등 하수도 업무 추진

1. 하수도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 등을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실정보고·방침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23년 3월까지 ○○ ○○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5건에서 소운반 장비 변경(경운기→덤프 2.5톤) 등 6,629만원 감액(회수)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2.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공평가 미실시

-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등에 시장·군수는 2억원 이상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공사 착공 후 6개월 이내에 적정성에 대한 시공평가 규정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23. 3. 10. 감사일 현재 건설공사 착공 후 6개월 경과 된 해남 ○○○○○ 정비사업 등 2건의 시공평가 미이행

3. '20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 「하수도법」 제15조 등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
- '20년 도 종합감사 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지 않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25개소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도록 '시정요구' 처분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23년 3. 10. 감사일 현재까지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대상 25개소 중 18개소 부과·징수 7개소 1,888만원 미부과, 신규 상수도 보급지역 7개소 483만원 미부과

☞ '20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現 담당자 1명 "훈계요구"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시공평가 실시 및 하수도 정비사업에 과다 계상된 6,629만원을 감액(회수)하고 미부과된 공공하수도 사용료 2,371만원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시정요구"

3. 모범사례

1 전남 대표 지역상품권 “해남사랑상품권”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지역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확대로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 추진배경

- 지역자금 역외유출 최소화 및 코로나19 위기상황 신속 극복
 - 쇼핑·구매방식 비대면(온라인, 홈쇼핑 등) 확대로 지역상권 침체 가속화
-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지역상품권 유통 확대로 경제 마중물 역할
 - 농자재·농약·인건비 등 물가상승으로 인한 농촌 민생경제 지원
- 내부소비 촉진 유도를 통한 지역 소상공인 소득증대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9. 4. ~ '23. 3. 현재까지
 - ※ 상품권 출시 : 지류('19. 4.), 카드('21. 1.), 모바일상품권('23. 상반기 예정)
- 투입예산 : 553.4억원(국 242.5, 도 38.4, 군 272.5) / '19년~'23년
- '23년 발행규모 : 1,300억원(일반 1,200 / 정책 100)
- 주요내용
 - 할 인 율 : 상시 5% (특판 시 최대 10%)
 - 할인구매한도 : 상시 50만원 (특판 시 최대 100만원)
 - 판매방식
 - ① 지류 : 해남군 내 35개 판매 대행기관 현장 판매
 - ※ 해남군 ⇔ 군내 35개 금융지점 협약 체결하여 지류상품권 판매 대행
 - ② 카드 : 스마트폰 지역상품권 CHAK(앱) 통한 충전방식
 - ※ 해남군 ⇔ 운영사(한국조폐공사) 협약 체결하여 카드상품권 판매 대행

□ 추진실적

① 전국 군단위 발행·판매 1위, 사용률 전국 1위

- 첫 발행('19년 4월) 이후 누적 발행액(4,720억원)·판매액(4,504억원)
- 4년 연속 도내 최대 규모 발행·판매(신규)
- 전국 군단위 최대 발행·판매
- 국도비 최대 확보 / 도내 1위(누적 253억원)
- 사용률 1위 / 구매가능 인구수 대비 84.4% 사용(도내 1위, 전국 1위)



② 사용자 중심 편리성 확보

- 카드상품권 참여 카드사 확대 **신규**
 - 기존 1종(NH농협) → 확대 4종(추가: 신한,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 소비자 선택 확대 → 카드상품권 유통
- 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 연계
 - 온라인사이트 결제 시 카드상품권과 연계 신규 고객 확대 및 지역특산품 판매향상 윈윈(win-win)전략
- 카드상품권 택시결제 가능 **전남 최초**



③ 정책수당 지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 농어민 공익수당, 공직자복지포인트 등 해남사랑상품권 지급
 - (농어민 공익수당) 70,258농가 / 422억원
 - (공직자 복지포인트) 7,256명 / 61억원
 - (코로나19 재난지원금) 133,151명 / 199억원

○ 관광지 입장료 50% 상품권 환급

- 두륜미로파크, 우수영관광지, 공룡화석지, 땅끝전망대 관광지 유료 입장객 입장료 50%를 상품권으로 환급(2022. 12. 기준, 누적 4억 8,000만원 환급)
- ※ 관광객에게 환급된 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 확대에 연계효과 발생

○ 해남사랑상품권 구매릴레이 4년 연속 시행

- 기관·단체 등이 자체 포상금, 수당 등 각종 물품 구입 등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할인 없이 상품권을 액면가로 구매 후 지역 내 소비
- ※ 학교, 기업, 병원, 조합, 단체 등 236개소 동참(구매 누적액 60억 원)

		
복지포인트 지급	입장료 환급	구매 릴레이

④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지역 내 갈등 해결

○ '농·축협하나로마트' 상품권 사용 제한 유지

해남군	VS	농·축협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쓸림” 현상 방지 필요		허용 여부 재논의 필요 하나로 마트 가맹점 등록 허용

※ 상품권 사용 허용 : 농·축협 경제사업소(비료, 사료) 및 주유소

○ 전남 유일 상생협력 모델 지속(행정 - 농·축·수협)

⑤ 전남 유일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 선정

- '21년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 평가 '우수상' 수상(특교세 1억원)
- '22년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 평가 '국무총리상' 수상(특교세 2억원)

전남매일

2022년 8월 3일 수요일 010면 전남

카드형 해남사랑상품권 택시 결제 가능

전남 최초 8월부터 도입

8월부터 해남사랑상품권 카드로 해남군 내 운행 택시요금의 상품권 결제가 가능하다. 상품권 카드로 택시요금 결제는 전남에서는 처음 도입됐다.

2일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사랑상품권은 그동안 가맹점으로 등록된 택사에서 지류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했으나, 이달부터 카드형 해남사랑상품권으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더했다. 해남군은 한국조폐공사와 협의를 통해 교통사업자와의 결제 연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184개 신규 가맹점을 확대했다. 해남사랑상품권 카드는 지난 2021년부터 출시되고 있다. 한편 해남사랑상품권은 전국 군단위 최대 규모 발행, 판매액을 보이고 있는 지역상품권으로 올해도 1,450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군민들을 위해 항상 새롭고 앞서나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카드형 상품권을 이용하면 상품권을 온라인을 통해 쉽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외지에서 방문하는 관광객 등에게 편의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남=박병대 기자

해남군



전남 최초 택시요금 상품권 결제 도입

추석맞이 특별 할인 판매

“해남사랑상품권’ 해남미소 온라인 결제하세요”

郵, 시스템 구축 완료...카드상품권으로 사용 가능

2021. 07.01(목) 20:02 해남=박병대 기자

문물

해남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해남사랑상품권 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군은 7월부터 해남사랑상품권 카드 사용자들이 해남미소를 통해 지역 농·특산물 구매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카드상품권을 이용해 결제하기 위해서는 카드상품권 잔액 여부를 확인한 뒤 해남미소 결제창에서 NH결제카드를 선택해 결제를 실행하면 된다.

군은 해남미소 온라인 결제 시스템 구축에 이어 지역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해남투어패스와의 연계도 올해 하반기 완료할 계획이다.

해남군은 해남사랑상품권 사용자 편의성 향상과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카드형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카드는 언제 어디서나 시간·장소에 구애없이 상품권 충전이 가능하며 국제정적 적용 비율에 따른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남군은 국·도비 확보를 통해 상품권 10% 할인 판매를 실시하면서 해남사랑카드상품권으로 물품 구매 시 현금이나 일반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보다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 구축으로 해남사랑카드상품권과 해남미소 매출 증대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남=박병대 기자

해남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
해남사랑상품권 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

남도일보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016면 지역

해남군, 경제 활성화 평가 ‘대상’

전남도 평가 결과 선정 4년 연속 우수기관 쾌거

전남 해남군은 전남도에서 실시한 2022년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 결과 대상의 영예와 함께 포상금 1천500만원을 받았다. 해남군은 2020년과 2022년 2차례의 대상 수상을 포함해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기록도 세웠다.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는 시군에서 추진하는 우수 경제사회의 발굴 및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반시설, 물가안정 관리, 중소기업 지원·육성, 소상공인 지원·육성 등 6개 분야 18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정례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해 왔다.

특히 해남사랑상품권은 지난 2019년 발행이래 누적 발행 4천720억원, 전국 군단위 최대 발행·판매액과 함께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전남 대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도 1천550여원을 발행해 현재까지 4천467억원에 판매된 가운데 전국적인 경기 침체 가운데서도 지역 내 소비확진을 위한 상품 외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



해남군이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 대상에 선정됐다. /남도일보 제공

군은 각종 정책수단 등에 해남사랑상품권을 활용해 지역 내 선순환 경제구조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다짐을 약속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도 물가인정 대책을 추진해 물가 지평금 공요금 3종(상수도·하수도·쓰레기 분무료)을 동결했으며, 소상공인 대상 상수도 요금 감면과 착한가격안소 지원 강화로 지역 물가 안정화에 노력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육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스마트 공장 구축지원 등 10개 사업, 8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운영 시스템을 개선했고,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 지역 기

업의 경쟁력 강화와 매출증대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전남 최초로 시행한 소상공인 배급 수수료 지원사업은 비대면 배급 주문 증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실용적인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자생하인 정책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해남군 농식품가판 온라인 판매 장안지현, 해남군 피보팅 정년내내저 운영 등 해남형 일자리 창출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명현군 군수는 “내년에도 경제 활성화와 함께 최우선 목표로 두고, 군민들이 원하는 정책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이보훈 기자

’22.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 대상

[전남 해남군]해남군, 농어민 공익수당 이달 중 지급

2022/04/11 16:08 입력



전남 해남=김원규 기자



[전남 해남=김원규 기자]농어업 일인 경영체 등록 14,481명, 해남사랑상품권 각 60만원

해남군은 이달중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금액은 60만원으로 지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앞서 1~2월 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농어업 일인 경영체의 신청을 받아 검증을 거친 결과 해남군에서는 1만 4,481명이 선정돼, 지급액은 총 87억여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상으로 확정한 농어민은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지역농협을 방문해 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지급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유형으로 일괄 지급한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해남군청사 전경 /해남군 제공

전남 해남군은 결혼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군민들을 축하하고,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축하금과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만 49세 이하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 모두 도내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일 경우에 지원하는사업이다.

결혼장려금은 연형과 초재혼 제한없이, 부부 중 한명은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해남군에 주소를 둔 경우로, 혼인신고 후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각각 지원액은 200만 원이며, 이후 1년간 계속해서 해남군에 주소를 둔 경우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또한 해남으로 전입할 경우 전입장려금으로 1인당 5만 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해남군 전입 장려금 지급

뉴스 > 경제

해남군 공직자 복지포인트 99%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뉴트릭션 | 2022.04.16 | 송 신교

주소복사 스캔



해남군청

해남군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군 직원들이 출근수첩에 나가기로 했다.

군은 올해 군 공직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99%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복지포인트는 해남사랑상품권외에 온라인 복지를 포인트로 받을 수 있으나, 개별신청을 통해 대부분 공직자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을 신청했다.

이에따라 전체 지급총액 15억 8,000여만원 중 15억 6,000여만원(96.8%)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지역내 소상공인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경제 활력에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다. 복지포인트는 조기 사용을 위해 설 명절 전 상반기 지급이 완료됐다.

이같은 비율은 전국 지자체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군은 상품권을 활용한 지역상가 활성화에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군은 이번달부터 전 직원이 동참한 해남사랑투어도 실시한다.

지난해 코로나 극복을 위해 처음으로 시행된 해남사랑투어는 해남사랑상품권을 활용해 지역 관광지나 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소비촉진 운동이다.

이를 위해 직원특리후생사업으로 1인당 1만원, 총 1,300여만원의 해남사랑상품권을 지원하고, 상가 이용후 인증사진을 게재하는 릴레이를 펼친다.

군 관계자는“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공직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 시행하게 됐다”며“공직자들의 노력이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직자 복지포인트 지급

해남군, ESG 윤리경영 정책과제 '주변화대응탄소중립 실천과제' 본격적 추진

전남 해남군은 지난 2021년부터 해남형 그린 뉴딜사업'탐광형 희망 이'를 통해 주민참여형 자원순환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투명 폐트 병 등 20여 종의 재활용품을 깨끗하게 분리 배출해 가져오면 품위별 단가를 적용해 포인트로 적립 후 지역하매인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준다.

또한 해남군이 2022년 군정 비전으로'ESG 윤리경영'을 선포한 가운데 10대 실천과제인 자원순환 사업 참여를 통한 일회용품 사하지 않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동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상시 운영되고 있는 해남읍 재활용품 교환센터를 비롯해 월 2회 연 단위 현장 순회를 통해 올바른 재활용품 배출 확대와 자원순환 사업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주민참여 자원순환사업 포인트 지급

빈집정비와 작은학교 살리기를 연계한 지역소멸위기 적극 대응

빈집을 정비하여 귀농·귀촌자 등의 주거공간을 제공하면서, 교육, 일자리를 연계한 주거플랫폼 조성 및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지역소멸위기에 적극 대응

□ 추진배경

- 해남군은 '22. 3월 기준 인구소멸지수 0.19로 인구소멸 위험 대상 진입
- 빈집 사회적 문제에 대응을 위해 주거, 자녀 교육, 일자리를 연계한 지속 가능한 지역 상생 모델 필요

☐ 추진실적

1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한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 지역소멸위기 민·관·학 공동대응협의체 운영 : '21. 4.~6.
 - 작은학교 살리기 교육분과 활동, 작은학교 활성화 시범학교 선정(북일초)
- 주민주도성 확보 및 해남군 지원체계 구축 : '21. 9.~12.
 - 빈집제공, 전입 학부모 일자리 연계, 학생모심 캠페인·설명회(서울시청광장) 개최
- 빈집 수리비 지원(20호, 군비 300백만원) : '22. 1.~2.
- 빈집 정비사업과 연계 북일 작은학교 살리기 추진 : '22. 3.~12.
 - 20가구 70명 전입, 일자리 연계 13명
- '22년도 작은학교 살리기 대상학교 4개소 확대 : '22. 1.
 - 2개면(현산면, 계곡면), 4개교(현산초, 현산남초, 현산중, 계곡초)

< 작은학교(북일초) 살리기와 연계한 빈집정비사업 >

- ▷ 사업기간 : '22. 1. ~ 2. 20. ▷ 지원액 : 300백만원(군비) / 20가구
- ▷ 지원내용 : 리모델링 20가구(5년 무상 임대)
- ▷ 입주성과 : 94명(학부모 37, 유아 15, 초 36, 중 4, 고 2)

2 지역소멸대응 기금을 통한 빈집 정비 및 작은학교 살리기 확대

- 지역소멸대응기금 중 빈집 정비사업 6.2억원 신청 및 확보: '22. 8.
 - 땅끝해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사업량 : 빈집수리 30호 등)
- 농산어촌유학 등 작은학교 활성화시범사업 공동협약 : '22. 2.
 - 해남군, 전라남도교육청, 현산·북일·계곡 작은학교활성화추진위원회
- 땅끝해남 작은학교 살리기 빈집수리·학생모심 전개 : '22. 8.~12.
 - 현산·계곡면 빈집수리 9호, 학생모심 현장설명(25가구) 및 빈집확보
- 정비실적 : 현산면(전입 6가구, 24명, 빈집수리 8호), 계곡면(전입 3가구, 10명, 빈집수리 5호)
- 해남 작은학교 살리기 대외 홍보활동 전개 : '22. 9.~12.
 - 홍보부스 운영, 전국 라디오 광고(30일, 410회), 네이버 포털광고 등

3 작은학교 살리기(북일초) 연계형 주거플랫폼 사업

- 작은학교 살리기(북일초) 연계형 주거플랫폼 기본협약 : '22. 10.
 - 해남군↔NH(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기본 협약 체결
-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공모사업 선정 : '22. 8.
 - 작은학교 살리기(북일초) 연계형 주거플랫폼 선정(6,258백만원)
 - 공공임대주택(12호), 다목적체육관, 커뮤니티센터, 마을북카페 등
- 주거플랫폼 사업 행정 사전절차 이행 : '23. 1.~

< 작은학교살리기(북일초) 연계형 주거플랫폼 사업>

- ▶ 사업기간 : '22. 1. ~ 2. 20.
- ▶ 대상지 : 해남군 북일면 북일초 일원
- ▶ 사 업 비 : 6,258백만원(국 2,350, 지방 922, 민자 2,986*) * LH(한국토지공사)
- ▶ 사업내용 : 공공임대주택(LH) 12호, 북카페, 북일 5일 시장 일대 유희부지 활용한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생활SOC 인프라 구축

☐ 기대효과

-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정비하고 폐교 위기 작은학교 활성화로 104명(학생 42명, 학부모 등 62명)의 인구 유입으로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

서울시청 학생모집 캠페인



주거플랫폼 기본협약 체결



언론 보도자료

4 사회 2022년 1월 14일 금요일 / 제158호 해남신문

북일 빼고 13개 읍면 인구 모두 줄었다

지역별 100명 감소에 1만5000명 기록
북일 작은학교 살리기 효과도 3년째 눈에
10년새 1만2000명 빼면 4개 사라져

해남군 인구가 지난 10년 사이 100명씩 감소하는 등 평균 100명 이상 줄었다고 14일 인구조사결과가 나왔다. 해남군은 2011년 1만5000명에서 2021년 1만3000명으로 줄었다. 10년새 2000명 줄었다. 10년새 100명씩 줄었다면 20개 읍면이 사라진다. 해남군은 2011년 1만5000명에서 2021년 1만3000명으로 줄었다. 10년새 2000명 줄었다. 10년새 100명씩 줄었다면 20개 읍면이 사라진다.

대만 연수로 이어진 작은학교 살리기

북일·두문중 학생들 중 2명 중 1명
남북교류 3학년 1학기 생활 체험 활동

북일·두문중 학생들 중 2명 중 1명 남·북교류 3학년 1학기 생활 체험 활동을 했다. 해남군은 2011년 1만5000명에서 2021년 1만3000명으로 줄었다. 10년새 2000명 줄었다. 10년새 100명씩 줄었다면 20개 읍면이 사라진다.

언론 보도자료

해남신문 검색

뉴스 기획특집 이슈종합 생활정보 오타니만 게시판 회사소개 해남방송

1면 | 해남지사 | 사회 | 농수축산 | 문화 | 해남사람들 | 여성 | 교육 | 문화

계곡·현산 작은학교 살리기 '성과'

1학기 중 8가구 30명 전입 예정
목포노동청과 일자리 업무협약

2022.02.17 17:14:14

고 살리기 [일자리지원] 업

해남군, 목포고용노동지청, 현산면·계곡면 작은학교추진위

해남군, 목포고용노동지청, 현산면·계곡면 작은학교추진위원회가 14일 목포시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해남군 김남선 군수, 목포고용노동지청 김남선 지청장, 현산면·계곡면 작은학교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4. 처분요구서

목 차

①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39
② 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 인사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주의)	43
③ 징계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48
④ 사회보장급여 지급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51
⑤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미공표(시정, 주의)	56
⑥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징계, 훈계, 주의)	59
⑦ 수의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64
⑧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등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주의)	68
⑨ 자연휴양림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등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71
⑩ 정부광고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74
⑪ ○○○○○○ 민간보조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시정, 주의)	76
⑫ 현장감독공무원 피복비 집행 부적정(훈계, 주의)	80
⑬ ○○○○ ○○사업 보조사업 정산 및 관리 부적정(시정, 주의)	83
⑭ 상속재산 취득세 등 지방세 관리 부적정(시정, 주의)	90
⑮ 도로점용료 등 세외수입 관리 부적정(시정)	95
⑯ 세입세출외현금 세입 및 세출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주의)	98
⑰ 자동차 관련 행정처분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시정)	103
⑱ 국고보조금 등 반납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108

①9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주의)	112
②0 농업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사후관리 등 부적정(시정)	116
②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지원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120
②2 석유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및 고발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주의)	124
②3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 부적정(징계, 훈계, 주의)	129
②4 사립미술관 운영 보조금 관리업무 부적정(훈계, 시정)	136
②5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141
②6 재해영향평가등의 관리책임자 지정·통보 등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144
②7 지방재정 투자심사 미 실시 등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주의)	147
②8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정산 부적정(시정)	153
②9 지장물(지장전주) 이설공사비 부가가치세 지급 부적정(시정)	156
③0 공사 구간 내 사용 협의 없이 국·공유지 무단 훼손(훈계, 시정)	159
③1 업무대행건축사 운영 부적정(개선)	163
③2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주의)	166
③3 개발행위 사후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시정)	169
③4 옥외광고물 사후관리 부적정(훈계, 시정)	172
③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시정, 주의)	175
③6 하수도 정비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시정)	183
③7 해양수산사업 및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주의) ...	191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해남군(총무과, 안전교통과, 재무과, 삼산면, 산이면)

내 용

1. 업무 개요

해남군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40명의 공무직 신규 채용 및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관리 운용하였다.

2. 공무직 신규 채용 및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전환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해남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부서는 소속부서의 인력 및 사무량, 채용목적, 인원 등의 적정 여부와 상시·지속적 업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 근로자 등의 정수를 책정 운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 7. 20.)」 1. 개요 편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기준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판단하여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소속부서의 인력과 사무량, 채용목적, 인원 등의 적정 여부와 상시·지속적 업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 근로자 등의 정수를 책정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할 때에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판단하여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남군(총무과)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별표] “공무직 전환·채용 현황”과 같이 ○○읍 ○○○ 등 40명에 대한 공무직 신규 채용 및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속부서의 인력 및 사무량, 채용목적, 인원 등의 적정 여부와 상시·지속적 업무 여부 등의 검토 절차 없이 공무직 근로자의 정수를 책정하였고,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대한 판단 없이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공무직 신규 채용 및 기간제 공무직 전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3. 채용 결격사유 확인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해남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에 따르면 각 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해당 등록기준지 관할 행정관청에 조회를 의뢰하는 등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남군(총무과)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별표] “공무직 전환·채용 현황 및 결격사유 조회 명세”와 같이 ○○과 ○○○ 등 28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채용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않

1) 제13조 제1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2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제3호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5호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6호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제7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4.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절차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해남군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은 관리부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9개월 미만의 한시적 근로자 채용의 경우 및 국·도비 재원 기간제 채용 등은 관리부서와 협의 후 소속부서장이 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은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채용 예정 업무 내용, 자격, 채용조건 등의 내용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다만 1호부터 3호²⁾의 경우에만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그 외는 채용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9개월 미만의 한시적 근로자 채용 및 국·도비 재원 기간제 채용 등은 관리부서와 협의 후 소속부서에서 채용할 수 있고, 채용 공고를 생략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채용 예정 업무 내용, 자격, 채용조건 등의 내용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남군(안전교통과, 재무과, 삼산면, 산이면)은 [표]와 같이 2020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과 ○○○ 등 8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소속 부서에서 채용하면서 공고를 생략할 사유가 없는데도 군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는 사전 절차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

2) 제10조 제3항 제1호 직제 개편 등 불가피한 고용조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3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당사와 유사한 업무를 할 근로자로 계약해지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제2호 기간제 근로자를 동종·유사직종의 공무원 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제3호 채용계약 체결후 3개월 이내에 최종 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예고없는 퇴직 등에 대해 예비합격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미공고 현황(2020년 2월~2023년 1월)

연번	해당 부서	성명	근로계약 기간	담당업무
계		8명		
1	○○○○과	○○○	2021.00.00.~2022.00.00.	○○○ ○○검사
2	○○○○과	○○○	2021.00.00.~2022.00.00.	○○○ ○○검사
3	○○과	○○○	2021.00.00.~2021.00.00.	○○,○○○○○ ○○신고 ○○ 신고○○○
4	○○과	○○○	2020.00.00.~2020.00.00.	○○,○○○○○ ○○신고 ○○ 신고○○○
5	○○과	○○○	2020.00.00.~2020.00.00.	○○,○○○○○ ○○신고 ○○ 신고○○○
6	○○면	○○○	2021.00.00.~2021.00.00.	○○○○ ○○○ ○○ 근무자
7	○○면	○○○	2022.00.00.~2022.00.00.	○○○○ ○○○ ○○ 근무자
8	○○면	○○○	2022.00.00.~2022.00.00.	○○○○장 ○○○○자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해남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해남군수는 공무원 신규 채용 및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원으로 전환할 때에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원의 적정 여부와 상시·지속적 업무 여부 등을 검토하고, 결격사유 확인 및 사전 공고 절차를 준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훈계·주의요구

제 목 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 인사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해남군(총무과)

훈 계 대 상 자 해남군 ○○면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 개요

해남군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 ○○ ○○ 분야 ○○○○ ○ 등 12개 분야에 15명의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였고, 5급 이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2차례씩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면서 자격증 가산점 평정 업무 및 정기인사를 추진하였다.

지방○○주사 ○○○는 2020. 0. 0.부터 2022. 0. 00.까지 ○○과에서 임기제 공무원 채용, 자격증 가산점 평정 등 인사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 시험위원 위촉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공직자의 채용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 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XI. 임기제 공무원 인사관리 2. 임기제공무원 임용 편에 따르면 시험위원은 △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조교수 이상) △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 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시험위원의 수는 최소 5명 이상으로하고 이 중 2/3 이상은 외부전문가(교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임용시험 단계별로 시험위원을 달리 임명·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고, 시험위원은 응시자와의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등)가 없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2019년 인사혁신처에 발간한 공정채용 가이드북에 따르면 임기제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시 서류전형 시험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외부위원을 1/2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공직자의 채용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임기제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할 때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서류전형 시험위원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외부위원을 1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면접시험에서 시험위원의 수는 최소 5명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외부위원을 4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응시자와 근무경험 관계 등이 없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였다 하더라도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은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시험에 참여하지 않도록 기피·회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남군(총무과)은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별표 1] “임기제 공무원 채용 명세”와 같이 임기제 공무원 15명을 채용하면서 내부직원 2명으로만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구성한 채 부적정하게 서류전형 평가를 실시하였고,

2020년도 제1회 해남군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2020. 0. 00. 면접시험 시험위원을 외부위원 3명, 내부위원 1명 총 4명으로만 위촉한 채 부적정하게 면접시험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총무과는 2020년도 제5회 해남군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 경쟁 채용시험에서 2020. 00. 00. 면접시험 시험위원인 ○○이 응시자 ○○○과 0년 0개월 동안 해남군 ○○○○과에서 함께 근무한 경험 관계가³⁾ 있는데도 시험위원으로 제척하거나 기피·회피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면접시험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로 인하여 내부위원 위주로의 서류전형 평가, 외부위원 수 과소 위촉, 응시자와 근무경험 관계가 있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자격증 가산점 평정 부당 부여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서 영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 영 제17조 제1항 제3호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자격증 가산점을 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가산점 평정을 할 경우 대상 공무원이 가산점 부여 대상자인지 확인한 후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남군(총무과)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별표 2] “자격증 가산점 부당 부여 명세”와 같이 자격증 가산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자격

3) ○○ : 2010. 0. 0.부터 2016. 0. 0.까지 해남군 ○○○○과에서 ○○팀장으로 근무, ○○○ : 2013. 00. 00부터 2017. 00. 00.까지 해남군 ○○○○과에서 ○○○○○으로 근무

중 소지자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지방○
○8급 ○○○ 등 45명,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에 임용된 지방○
○8급 ○○○ 등 25명 등 총 70명에 대하여 자격증 가산점 0.5점을 최대 6회까지
부당하게 부여하였다.

그로 인하여 부당하게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다
른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6급 승진임용을 위한 결원 수 과다 산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
여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4항
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고, 상위직급
에 결원이 있을 경우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소속 7급 공무원을 6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할 때에는 6
급 정원 내에서 승진 임용을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남군(총무과)은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표] “6급 승진의
결 부당 현황”과 같이 7급 공무원에서 6급 공무원으로의 승진대상자를 인사위원
회에서 의결하면서, 5급 공무원 승진후보자로 결정된 6급 공무원이 아직 승진임
용이 되지 않아 6급 공무원 결원으로 산정할 수 없는데도 이를 6급 공무원 결원
으로 산정하여 정당한 승진요인 53명보다 부당하게 18명을 초과하여 71명을 승
진 의결하고 승진 임용하였다.

[표] 6급 승진의결 부당 현황

(단위 : 명)

승진의결일	6급 정원 (가)	6급 현원			6급 결원			승진 의결	비고 (과원 해소일)
		실제현원 (나=A-B)	현원 (A)	근속승진 현원(B)	결원 (가-나)	추가 요인	총 결원		
계							△53	71	초과 18
2019.00.00.	191	183	230	47	△8	△6	△14	17	초과 3 (2020.00.00.)
2020.00.00.	193	190	243	53	△3	△7	△10	13	초과 3 (2020.00.00.)
2020.00.00.	195	190	240	50	△5	△7	△12	16	초과 4 (2021.00.00.)
2021.00.00.	195	193	247	54	△2	△4	△6	7	초과 1 (2021.00.00.)
2021.00.00.	195	191	245	54	△4	△3	△7	11	초과 4 (2022.00.00.)
2022.00.00.	196	194	246	52	△2	△2	△4	7	초과 3 (2023.00.00.)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다른 7급 직원들은 정당하게 다음 6급 승진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었고, 5급 승진후보자로 선정된 공무원이 실제 승진임용되기까지 최대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6급 과원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해남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해남군수는

- ① 임기제 공무원 채용 업무와 자격증 가산점 평정 업무 등 인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지방○○주사 ○○○를 훈계하고(훈계)
- ② 앞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및 자격증 가산점 평정, 승진임용을 위한 결원 산정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 [별표 2] 생 략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징계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해남군(총무과, 기획실)

내 용

1. 업무 개요

해남군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광주지방검찰청해남지청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 직원의 피의사건 및 6급 이하 소속 직원의 경징계의결 요구 건에 대하여 해남군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분하였다.

2. 수사기관에서 통보받은 범죄사건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제3호에 따르면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기소유예, 그 밖의 처분 또는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및 별표 4의 기준 적용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징계등 사유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위원회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해남군청원경찰징계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군수는 청원경찰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해남군인사위원회에 징계의 종류를 명시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소제기, 기

소유에, 그 밖의 처분 또는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및 별표 4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해남군(기획실)은 수사기관에서 통보받은 소속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10건에 대하여 타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별표 1] “징계의결요구 지연처리 명세”와 같이 최소 9일부터 최대 155일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지연하였다.

그로 인하여 관계 법령에 규정된 기한 내 징계의결 요구 등이 처리되지 않아 징계의결 요구된 대상자가 승진 및 급여 등에 있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우려를 초래하였다.

3.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결과에 대한 심사절차 미이행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징계처분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법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의결 심사 청구서에 사건 관계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 인사실무(행정안전부) 제9장 복무 및 징계의 3. 징계편에 따르면 실제로 심사를 하기 전에 권한있는 징계처분권자가 적법하게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비록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심사청구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 후에는 심사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징계의결요구부서(기획실)의 경징계의결 요구에 대한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를 처분할 때는 우선 그 의결 결과를 징계의결요구부서에 통보하여 징계의결요구부서의 심사 청구 의사를 확인한 후 징계대상자에게 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해남군(총무과)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징계의결요구부서(기획실)로부터 경징계 의결을 요구받은 ○○○○0급 ○○○ 등 10명에 대하여 징계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별표 2] “징계의결 심사 절차를 위반한 징계 명세”와 같이 징계의결요구부서의 심사 청구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해남군인사위원회 징계의결 결과와 함께 징계처분을 통보하는 등 징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그로 인하여 징계의결요구부서는 해남군인사위원회 징계의결 결과에 대한 심사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해남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해남군수는 앞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범죄사건 및 징계의결 결과에 대한 심사절차 이행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 [별표 2] 생 략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사회보장급여 지급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해남군(복지정책과, 가족행복과)

내 용

1. 업무 개요

해남군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과 복지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중 소득 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최저 생계비 이하인 세대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주거급여 등의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만 65세 이하 중 소득기준액 이하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2. 신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과소 지급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 및 「기초연금법」 제14조에 따르면 수급권자로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안내」 소급 지급 편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복지급여 신청을 성실하게 하였는데도 보장기관이 반영을 누락하는 등 그 귀책 사유가 보장기관에 있을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자에게 미지급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5년 이내에 미지급된 급여를 소급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같은 지침 급여지급 절차 편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매월 급여 확정 전까지 소득인정액, 가구원 변동, 전출입 등을 확인하여 지급 급여를 변동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복지급여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이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생계 및 주거 실태 등이 변동된 경우 매월 급여 확정 전까지 변동자료를 확인하여 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해남군(복지정책과, 가족행복과)은 2021. 00. 0.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여 수급권이 결정된 ○○○에 대하여 신청일이 속한 2021년 12월부터 생계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2개월분인 365,340원을 누락한 채 2022년 2월부터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등 [표 1]과 같이 총 18명에게 6,205,450원을 과소지급하였다.

[표 1] 신규 수급자 생계급여·기초연금 과소 지급 현황(2020년 1월~2023년 1월)

(단위 : 원)

구분	연번	대상자	생년월일	최초신청일	실제 지급		정당 지급 금액(b)	과소지급 (c=b-a)	비고
					최초 지급일	금액(a)			
계		18명						6,205,450	
생계 급여	소계	2명				301,450	971,930	670,480	
	1	○○○	1900.00.00.	2021.00.00.	2022.00.00.	166,990	532,330	365,340	2개월 과소
	2	○○○	1900.00.00.	2022.00.00.	2022.00.00.	134,460	439,600	305,140	3개월 과소
기초 연금	소계	16명				3,453,880	8,988,850	5,534,970	
	1	○○○	1900.00.00.	2020.00.00.	2020.00.00.	25,470	76,410	50,940	2개월 과소
	2	○○○	1900.00.00.	2020.00.00.	2020.00.00.	64,520	258,080	193,560	3개월 과소
	3	○○○	1900.00.00.	2021.00.00.	2022.00.00.	246,000	492,000	246,000	1개월 과소
	4	○○○	1900.00.00.	2022.00.00.	2022.00.00.	246,000	738,000	492,000	2개월 과소
	5	○○○	1900.00.00.	2022.00.00.	2022.00.00.	246,000	738,000	492,000	2개월 과소
	6	○○○	1900.00.00.	2022.00.00.	2022.00.00.	246,000	738,000	492,000	2개월 과소
	7	○○○	1900.00.00.	2022.00.00.	2022.00.00.	246,000	492,000	246,000	1개월 과소
	8	○○○	1900.00.00.	2022.00.00.	2022.00.00.	246,000	738,000	492,000	2개월 과소
	9	○○○	1900.00.00.	2022.00.00.	2022.00.00.	246,000	492,000	246,000	1개월 과소
	10	○○○	1900.00.00.	2022.00.00.	2022.00.00.	283,580	850,740	567,160	2개월 과소
	11	○○○	1900.00.00.	2022.00.00.	2022.00.00.	246,000	738,000	492,000	2개월 과소
	12	○○○	1900.00.00.	2022.00.00.	2022.00.00.	307,500	615,000	307,500	1개월 과소
	13	○○○	1900.00.00.	2022.00.00.	2022.00.00.	132,450	264,900	132,450	1개월 과소
	14	○○○	1900.00.00.	2022.00.00.	2022.00.00.	105,500	316,500	211,000	2개월 과소
	15	○○○	1900.00.00.	2022.00.00.	2022.00.00.	243,680	487,360	243,680	1개월 과소
	16	○○○	1900.00.00.	2022.00.00.	2023.00.00.	323,180	953,860	630,680	2개월 과소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3. 사망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급여 미지급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및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안내」 장제급여 편에 따르면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 조치를 실제로 실시하는 사람에게 1인당 800천원의 장제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장제급여 지급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가구원 또는 장제조치를 실시하는 사람이 장제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해남군(복지정책과)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이 2022. 0. 00. 사망하였으나 장례를 책임진 자가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장제급여 800천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2020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표 2]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한 이후 장례를 책임진 자 총 3명에게 2,400,000원의 장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표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 미지급 현황(2020년 1월~2023년 1월)

(단위 : 명, 원)

연번	대상자	생년월일	사망일	미지급 장제급여액	미지급 사유
계	3명			2,400,000	
1	○○○	1900.00.00.	2021.00.00.	800,000	미신청
2	○○○	1900.00.00.	2022.00.00.	800,000	미신청
3	○○○	1900.00.00.	2022.00.00.	800,000	미신청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4. 사망자 사회보장급여 착오 지급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안내」 급여의 실시 편 및 「장애인연금법」 제15조,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환수 편, 「기초연금법」 제16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 환수 편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수급권을 상실하면 상실 사유가 발생한 일이 속한 달까지 급여를 지급하고, 시장·군수는 수급권이 상실된 이후 지급된 급여 전액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사망일이 속한 달까지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고 사망일이 속하는 달 이후에 지급된 급여는 환수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해남군(복지정책과, 가족행복과)은 2022. 0. 00. 사망한 ○○○에게 2022년 2월까지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등 [표 3]과 같이 총 15명에게 4,981,530원을 과다 지급하고 환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2020. 0. 00. 사망한 ○○○은 사망일이 속한 달인 2020년 9월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2020년 8월까지만 지급하여 1개월분 300,000원을 과소 지급하였다.

[표 3] 사망자 사회보장급여 착오 지급 현황(2020년 1월~2023년 1월)

(단위 : 원)

구분	연번	성명	생년월일	사망일	최종지급일	과소지급액	과다지급액	비고
계		16명				300,000	4,981,530	
생계급여	소계	1명					275,950	
	1	○○○	1900.00.00.	2022.00.00.	2022.00.00.		275,950	1개월 과다
장애연금	소계	3명					120,000	
	1	○○○	1900.00.00.	2022.00.00.	2022.00.00.		40,000	1개월 과다
	2	○○○	1900.00.00.	2022.00.00.	2022.00.00.		40,000	1개월 과다
	3	○○○	1900.00.00.	2022.00.00.	2023.00.00.		40,000	1개월 과다
장애수당	소계	1명					80,000	
	1	○○○	1900.00.00.	2022.00.00.	2022.00.00.		80,000	2개월 과다
기초연금	소계	11명				300,000	4,505,580	
	1	○○○	1900.00.00.	2021.00.00.	2021.00.00.		240,000	1개월 과다
	2	○○○	1900.00.00.	2021.07.22.	2022.00.00.		1,807,500	6개월 과다
	3	○○○	1900.00.00.	2022.00.00.	2022.00.00.		307,500	1개월 과다
	4	○○○	1900.00.00.	2022.00.00.	2022.00.00.		307,500	1개월 과다
	5	○○○	1900.00.00.	2022.00.00.	2022.00.00.		307,500	1개월 과다
	6	○○○	1900.00.00.	2022.00.00.	2022.00.00.		307,500	1개월 과다
	7	○○○	1900.00.00.	2022.00.00.	2023.00.00.		323,180	1개월 과다
	8	○○○	1900.00.00.	2022.00.00.	2023.00.00.		323,180	1개월 과다
	9	○○○	1900.00.00.	2022.00.00.	2023.00.00.		323,180	1개월 과다
	10	○○○	1900.00.00.	2022.00.00.	2023.00.00.		258,540	1개월 과다
	11	○○○	1900.00.00.	2020.00.00.	2020.00.00.	300,000		1개월 과소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해남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해남군수는 수급자 22명에게 생계급여 등 과소 및 미지급된 사회보장급여 8,905,450원을 추가 지급하고, 과다 지급한 15명에 대해 4,981,530원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미공표

관계기관(부서) 해남군(관광실)

내 용

1. 업무개요

해남군은 식품·공중위생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등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내 식품·공중위생 업소 2,27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식품위생법」 제84조에 따르면 폐기처분, 허가취소, 품목제조정지, 폐쇄조치, 영업정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소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영업의 종류,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등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6에 따르면 폐쇄조치, 영업정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소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영업의 종류,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등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와 공중위생영업자의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영업자의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중 폐쇄조치, 영업정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품목제조정지를 처분한 업소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해남군(관광실)은 2020년부터 2023년 1월까지 해남군 관내 식품위생 업소와 공중위생업소 중 관련 법을 위반한 74개소에 대하여 폐쇄조치 및 영업정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품목제조정지의 처분을 하였으나 [표] 및 [별표]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표대상 명세”와 같이 65개소에 대하여 군 홈페이지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 신문 등에 게재하지 않았다.

또한 1개소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았고 전국 보급 일간신문 등에도 게재하지 않은 채 전국 시·군·구에 알림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갈음하여 법에 명시된 게재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

[표]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미공표 현황(2020년~2023년 1월)

(단위 : 개소)

연도	행정처분업소			미공표 현황		
	계	식품위생위반	공중위생위반	계	식품위생위반	공중위생위반
계	74	70	4	66	63	3
2020	45	43	2	41	40	1
2021	10	9	1	10	9	1
2022	19	18	1	15	14	1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해남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해남군수는

- ①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한 업소 중 처분기한 내에 있는 행정처분 업소의 위반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시정)
- ② 앞으로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맞게 행정처분하고 공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 라 남 도

징 계·훈 계·주의요구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해남군(건설도시과)

징 계 대 상 자 해남군 ○○면 지방○○서기 ○○○

징 계 의 종 류 경징계

훈 계 대 상 자 해남군 ○○○○과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개요

해남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성, 기술성 등이 필요한 용역 계약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서기 ○○○은 2021. 0. 0.부터 2022. 0. 00.까지 해남군 ○○○○과(前 ○○○○과) ○○○○팀에서 해남군 ○○○○○○ 운영 및 ○○사업 ○○○ 및 ○○○○ 용역 등 해남군 ○○○○ 관련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고, 지방○○주사 ○○○은 2021. 0. 0.부터 20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해남군 ○○○○과(前 ○○○○과)에서 해남군 ○○○○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 협상에 의한 계약 정성적 평가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 결정기준”이라 한다)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편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하며, 입찰공고에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4. 제안서의 평가편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안서 평가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 평균한 점수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남군(건설도시과)은 2022. 0. 00. ○○○○○○ 운영 용역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한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기준¹⁾에 따라 평가를 하여야 하는데도 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는 것이 아닌 [별표 1] “해남군 ○○○○○○ 운영 용역 정성적 평가기준 배점표 명세”와 같이 평가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를 진행하여, [표]와 같이 정당한 제안서 평가 결과 1순위 업체인 (○)○○○○○○○○□이 아닌 2순위 업체인 (○)○○○○○○○○○를 우선 협상자로 부당하게 선정하였다.

1) 정성적 평가 분야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로 함.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표] 해남군 ○○○○○○ 운영 용역 평가 결과 현황

(단위 : 점)

구분	해남군 제안서 평가 결과		정당한 제안서 평가 결과	
	(○)○○○○○○○○○○○	(○)○○○○○○○○○○□	(○)○○○○○○○○○○○	(○)○○○○○○○○○○□
합계	91.1 (1순위)	90.9 (2순위)	91.0 (2순위)	91.24 (1순위)
정량적 평가	19.8	19.1	19.8	19.1
정성적 평가	61.3	62.6	61.2	62.9
가격 평가	10.0	9.2	10.0	9.24

자료 : 해남군 제안서 평가결과 자료 재구성

3.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편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하며, 입찰공고에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편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9항에 따라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의 정성적 평가에 있어 평가위원 7인 이상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불가피하게 당초 선정된 평가위원이 불참할 경우 예비평가위원으로 대체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남군(건설도시과)은 2022. 0. 00. ○○○○ ○○사업 ○○○ 및 ○○○○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별표 2] “해남군 ○○○○ ○○사업 ○○○ 및 ○○○○ 용역 평가심사위원 참석 결과 명세”와 같이 평가위원 7인 중 6인만 참석하였는데도 [별표 3] “해남군 ○○○○ ○○사업 ○○○ 및 ○○○○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예비위원 명단 명세”에 따른 예비평가위원 1인을 소집하지 않고 참석한 6인으로만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해남군은 「낙찰자 결정기준」 및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평가방법을 위반하여 정성적 평가를 진행, 협상에 의한 계약 정성적 평가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업무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

지방○○서기 ○○○은 2021. 0. 0.부터 2022. 0. 00.까지 해남군 ○○○○과(前 ○○○○과) ○○○○팀에서 해남군 ○○○○ 관련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2022. 0. 00. 해남군 ○○○○○○ 운영 용역과 2022. 0. 00. ○○○○ ○○사업 ○○○ 및 ○○○○ 용역 계약건에 대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협상에 의한 계약 정성적 평가 업무 처리 부적정

○○○은 2022. 0. 00. ○○○○○○ 운영 용역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한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여야 하는데도 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는 것이 아닌 평가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부당하게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해남군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정성적 평가기준대로 평가를 하지 않아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하였으며, 정당한 제안서 평가 결과 1순위인 (○)○○○○○○○□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부적정

○○○은 2022. 0. 00. ○○○○ ○○사업 ○○○ 및 ○○○○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평가위원 7인 중 6인만 참석하였는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예비위원 명단을 작성하고도 예비평가위원 1인을 소집하지 않고 참석한 6인으로만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여 「낙찰자 결정기준」 및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평가방법을 위반, 정성적 평가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해남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징계요구 양정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한 지방○○서기 ○○○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 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해남군수는

- ①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의 정성적 평가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과소 운영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지방○○서기 ○○○을 경징계하고(징계)
- ②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팀장으로서 부당하게 업무 처리가 되도록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지방○○주사 ○○○을 훈계하며(훈계)
- ③ 앞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 추진 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 [별표 3] 생 략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수의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해남군(재무과, 공룡박물관, 화산면)

내 용

1. 업무개요

해남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장 제1절 제5호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1인 건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공사나 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제조의 계약에 있어 전체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사한 공정의 계약일 경우 분할하지 않고 일괄 계약을 추진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 경쟁 입찰로 계약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해남군(재무과, 공룡박물관, 화산면)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전체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사한 공정의 계약일 경우 일괄 계약을 추진하여야 하는데도 ○○○○ ○○공사 ○○○○○○○○ 용역 등 3건(총사업비²⁾ 174,298천원)의 유사사업에 대해 부당하게 13건(총계약금액³⁾ 166,325천원)으로 분할하여 ○○○○○ 등 3개 업체⁴⁾와 1인 건적 수의계약의 방법을 통해 부적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재무과

재무과는 2023. 0. 00. ○○ ○○ ○○○○ ○○공사 ○○○○○○○○ 용역 등 총사업비 104,808천원의 8건의 용역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의 목적, 과업의 내용 등을 검토하였을 때 통합 발주하여야 하는데도, 1인 건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12,450천원씩 8차례에 걸쳐 부적정하게 분할하여 총계약금액 99,600천원으로 ○○○○○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약 7,368천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였다.

[표 1] ○○○○ ○○공사 ○○○○○○○○ 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계약일	계약대상	총사업비	계약금액	입찰시 계약가능액 (낙찰률88%)	절감 가능액
계			104,808	99,600	92,232	7,368
○○ ○○ ○○○○ ○○공사 ○○○○○○○○ 용역	2023.00.00.	○○○○○ ○○회사	13,101	12,450	11,529	921
○○ ○○ ○○○○ ○○공사 ○○○○○○○○ 용역	2023.00.00.	"	13,101	12,450	11,529	921

2) ○○과(104,808천원), ○○○○관(39,490천원), ○○면(30,000천원)

3) 수의계약 시 낙찰률 적용한 계약금액의 합계 : 95%(○○과 8건), 93%(○○○○관 2건), 100%(○○면 3건)

4) ○○○○○ ○○회사(○○과), ○○○○(○○○○관), ○○○○(○○면)

○○ ○○ ○○○○ ○○공사 ○○○○○○○○ 용역	2023.00.00.	"	13,101	12,450	11,529	921
○○ ○○ ○○○○ ○○공사 ○○○○○○○○ 용역	2023.00.00.	"	13,101	12,450	11,529	921
○○ ○○ ○○○○ ○○공사 ○○○○○○○○ 용역	2023.00.00.	"	13,101	12,450	11,529	921
○○ ○○ ○○○○ ○○공사 ○○○○○○○○ 용역	2023.00.00.	"	13,101	12,450	11,529	921
○○ ○○ ○○○○ ○○공사 ○○○○○○○○ 용역	2023.00.00.	"	13,101	12,450	11,529	921
○○ ○○ ○○○○ ○○공사 ○○○○○○○○ 용역	2023.00.00.	"	13,101	12,450	11,529	921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나. 공룡박물관

공룡박물관은 2022. 00. 00. 공룡박물관 내 ○○○○○ ○○ ○○○ 제작 등 2건의 용역에 대해 계약을 추진하면서 1인 건적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표 2]와 같이 총사업비 39,490천원의 사업을 2건으로 부당하게 분할하여 총 36,725천원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약 1,974천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였다.

[표 2] 공룡박물관 ○○○○○ 제작 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계약일	계약대상	총사업비	계약금액	입찰시 계약가능액 (낙찰률88%)	절감 가능액
계			39,490	36,725	34,751	1,974
공룡박물관 ○○ ○○○ 제작	2022.00.00.	○○○○	19,490	18,125	17,151	974
행사운영용 ○○○○○ 제작(○○○○○○○○)	2022.00.00.	"	20,000	18,600	17,600	1,000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다. 화산면

화산면은 2022. 00. 00. ○○ ○○○ ○○○ ○○○ ○○○○공사 잔여구간 (L=1.4km, B=25m)에 대한 준설용역을 계약하면서 1인 건적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표 3]과 같이 총사업비 30,000천원을 3건으로 부당하게 분할하여 총 30,000천원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약 3,600천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였다.

[표 3] ○○ ○○○ 준설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계약일	계약대상	총사업비	계약금액	입찰시 계약가능액 (낙찰률88%)	절감 가능액
계			30,000	30,000	26,400	3,600
○○ ○○○ 준설용역(1구간)	2022.00.00.	○○○○	10,000	10,000	8,800	1,200
○○ ○○○ 준설용역(2구간)	2022.00.00.	"	10,000	10,000	8,800	1,200
○○ ○○○ 준설용역(3구간)	2022.00.00.	"	10,000	10,000	8,800	1,200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위 3개 부서의 부적정한 수의계약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을 통한 경쟁 입찰하였을 때보다 총 12,942천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해남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해남군수는 앞으로 관련 부서에 계약 관련 업무 추진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특정 업체에 부당한 혜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훈계·주의요구

제 목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해남군(총무과)

훈 계 대 상 자 해남군 ○○실 지방○○서기 ○○○

내 용

1. 업무개요

해남군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상·하반기 총 6회에 걸쳐 소속 전직원을 대상으로 ○○○ ○○행사를 추진하면서 포상금과 사무관리비로 해남사랑상품권과 기념품 등을 제공하였다.

지방○○서기 ○○○은 2020. 0. 0.부터 2021. 0. 0.까지 해남군 ○○과 ○○팀에서 해남군 ○○○ ○○행사 등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업무의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분야·부문·정책사업) 및 세부항목(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2. 일반운영비편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및 임차료 등을 목적으로 집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제2항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편에 따르면 포상금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법령 등에 의하여 생계비지원에 필요한 경비 및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이라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 지방자치단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편에 따르면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 집행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제2호 별표 2 업무추진비 2. 정원가산업무추진비편에 따르면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소속 전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지역상품권 및 기념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포상금이나 사무관리비가 아닌 업무추진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해남군(총무과)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상·하반기 ○○○ ○○행사를 추진하면서 [표]와 같이 지역상품권과 기념품을 구입하면서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아닌 포상금으로 6회에 걸쳐 291,570천원 상당의 지역상품권(해남사랑상품권)을, 사무관리비로 2회에 걸쳐 86,490천원 상당의 기념품(우산, 텀블러 등)을 구입하는 등 총 378,060천원을 세출예산의 목적외 용도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표] 해남군 ○○○ ○○행사 지원 현황

(단위 : 명, 천원)

연도	추진시기	대상자	소요예산	지원물품	1인당 제공액	예산과목
계	6회	전직원	378,060			
2022	00.00.~00.00.	1,440	43,200	해남사랑상품권	30	포상금

	00.00.~00.00.	1,399	41,970	해남사랑상품권	30	포상금
			41,970	손수건, 텀블러	30	사무관리비
2021	00.00.~00.00.	1,484	44,520	해남사랑상품권	30	포상금
			44,520	우산	30	사무관리비
	00.00.~00.00.	1,374	41,220	해남사랑상품권	30	포상금
2020	00.00.~00.00.	1,394	83,640	해남사랑상품권	60	포상금
	00.00.~00.00.	1,234	37,020	해남사랑상품권	30	포상금

자료 : 해남군 차세대지방재정 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지방재정법」 제47조 등에서 규정하는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 용도로 경비를 집행하는 등 부적정한 업무 처리로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해남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해남군수는

- ① 업무추진비성 경비를 포상금과 사무관리비 등 세출예산 목적 외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지방○○서기 ○○○을 훈계하고(훈계)
- ② 앞으로 ○○○ ○○행사 등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를 진행할 경우 세출예산 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로 편성·집행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자연휴양림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해남군(산림공원과)

내 용

1. 업무 개요

해남군은 1999. 7. 13. 흑석산 휴양림¹⁾을 개장하여 2020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표 1]과 같이 운영·관리하고 있다.

[표 1] 흑석산 자연휴양림 운영 현황

(단위 : ha)

위치	부지면적	조성승인	개장일	시설현황
해남군 계곡면 가학리 산1임	50	1995. 10. 10.	1999. 07. 13.	·숲속의 집 18동, 휴양관 4동, 야영장 13개소, 치유의 숲, 유아숲 체험관, 원숭이 사육장 등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2. 휴양림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자는 자연휴양림의 시설물·이용객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의 구성,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훈련, 안전 점검의 방법 및 점검주기, 재난·사고의 발생 시 조치방안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자연휴양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1) 1999. 7. 13. 가학산 자연휴양림으로 개장하여 2020. 7. 1. 흑석산 자연휴양림으로 명칭 변경

또한 산림청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 제5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자연휴양림의 운영·관리자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이용객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사고 및 재난발생의 잠재적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난발생시 대책반 구성 및 책임사항 등²⁾을 포함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흑석산 자연휴양림을 운영·관리하면서 자연휴양림의 시설물과 이용객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의 구성,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훈련, 안전점검의 방법 및 점검주기, 재난·사고의 발생 시 조치방안 등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를 전담할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남군(산림공원과)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흑석산 자연휴양림을 운영·관리하면서 재난·사고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이용객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여 수립하는 휴양림 안전관리계획을 단 한차례도 수립하지 않았고, 휴양림의 안전관리를 전담할 안전관리책임자 또한 지정하지 않는 등 안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휴양림 안전점검 미 실시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산림청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자연휴양림의 운영·관리자는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자연휴양림을 운영

2) 재난발생시 세부조치 사항, 내/외부에 대한 비상상황 전달 방안, 인명대피·구조계획

하기 위하여 매일점검³⁾, 월별점검⁴⁾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자연휴양림 내 모든 직원들에게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연 2회 이상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안전사고 모의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흑석산 자연휴양림을 운영·관리하면서 자연휴양림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매일점검 및 월별점검 등을 실시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연 2회 이상 소방서 등의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안전사고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남군(산림공원과)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표 2]와 같이 직원들에게 안전사고 예방교육은 매년 2회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으나, 흑석산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관계기관과 합동훈련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흑석산 자연휴양림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현황(2020년 2월~2023년 1월)

연도	구분	안전사고 예방교육	자체점검		모의훈련 여부
			매일점검	월별점검	
2020	상반기	여	부	부	부
	하반기	여	부	부	부
2021	상반기	여	부	부	부
	하반기	여	부	부	부
2022	상반기	여	부	부	부
	하반기	여	부	부	부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해남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해남군수는 앞으로 자연휴양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3) 매일점검 : 자연휴양림의 운영·관리자가 시설, 건축물,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

4) 월별점검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전반적인 시설물 등 안전점검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정부광고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해남군(관광실, 가족행복과, 문화예술과, 경제산업과, 산림공원과)

내 용

1. 업무 개요

해남군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군민들을 위한 정책·사업 및 관광 등의 정보 전달을 위해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정부광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르면 정부기관등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소요 예산, 내용, 광고물 제작 여부 등 정부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고,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부광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정부광고 업무편람」 II. 제3장 정부광고 운영절차편에 따르면 정부광고주가 직접 광고 제작·종합광고 협력사를 선정할 경우에는 언론재단 담당자와 사전 상담 후 국가계약법 등 해당법령 및 관련 절차에 의거해 협력사를 자체 선정하여 언론재단에 광고요청을 하거나, 언론재단에 협력사 선정의뢰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언론재단 담당자와 사전상담하여 국가계약법 등의 절차에 의거하여 협력사를 자체선정하고 언론재단에 광고를 의뢰하거나, 언론재단에 협력사 선정의뢰를 요청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해남군(관광실, 가족행복과, 문화예술과, 경제산업과, 산림공원과)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별표] “정부 광고 업무 처리 부적정 명세”와 같이 ○○○ ‘○○ ○○ ○○, ○○ ○○ ○’ 공동홍보비 지급 등 총 36건에 대해 81,368천원의 홍보비를 집행하면서 언론재단 담당자와 사전 상담이나 선정의뢰 등의 절차 없이 직접 업체를 선정하여 정부광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해남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해남군수는 앞으로 정부 광고를 통한 홍보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라남도

훈계·시정·주의 요구

제 목 ○○○○○○ 민간보조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해남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훈 계 대 상 자 ① 해남군 ○○○○과 지방○○○○○ ○○○

② 해남군 ○○○○과 지방○○주사보 ○○○

③ 해남군 ○○○○과 지방○○○○○ ○○○

④ 해남군 ○○○○과 지방○○○○○ ○○○

⑤ 전라남도 ○○○○○○ ○○○○과 지방○○○○○ ○○○

내 용

1. 업무개요

해남군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 ○○○○조성 ○○사업” 등 62개 보조사업에 115억원을 지원하여 농업용 시설·기계장비 등을 구축하였다.

지방○○○○○ ○○○은 2020. 0. 0.부터 20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과 ○○○○○팀에서 근무하고 있고, 지방○○주사보 ○○○은 2021. 0. 0.부터 2022. 00. 00.까지 ○○○○과 ○○○○팀에서 근무하였으며, 지방○○○○○ ○○○은 2021. 0. 0.부터 2023. 0. 00. 감사일 현재까지 ○○○○과 ○○○○팀에

서 근무하고 있고, 지방○○○○○ ○○○은 2020. 0. 0.부터 2022. 00. 00.까지 ○○○○과 ○○○○팀에서 근무하였으며, 지방○○○○○ ○○○은 2017. 0. 00.부터 2020. 00. 00.까지 ○○○○과에서 근무한 후 2021. 0. 0.부터 2021. 0. 00.까지 ○○○○과에서 근무하였다.

2. 농업용 기계장비 구매 계약 지도·감독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1조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거나,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러한 내용을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4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은 보조사업자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거나,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교부조건 준수 여부 등 지도·감독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해남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은 2020. 0. 00. 보조사업자 ○○○이(주)○○○과 ○○○○○○○○ 등 4종 6개 물품을 3천만원에 구매하면서 수의계약 하는 등 [별표] “보조사업 물품 수의계약 구매 명세”와 같이 16개 사업 275종의 물

품을 850,510천원으로 수의계약하여 구매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일반입찰 등으로 하였을 경우 물품을 748,448천원으로 구매할 수 있었는데도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여 102,062천원의 보조금을 절감할 기회를 일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과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와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파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등(이하 “고유식별정보⁵⁾”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농촌지원과)은 민간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 중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후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고,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 수집·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 정

5)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보를 수집·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해남군(농촌지원과)은 2022. 0. 00. ○○○○ ○○○○ ○○○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신청자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2022. 0. 00. 선정이 완료되어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지 않고, 20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문서에 편철하여 사무실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동의와 별도로 고유식별정보 수집·동의를 받지 않고 2022. 0. 00.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제출받아 20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문서에 편철하여 사무실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해남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해남군수는

- ①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지 않고 농업용 기계장비를 직접 구매하도록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지방○○○ ○○ ○○○, 지방○○주사보 ○○○, 지방○○○○○ ○○○, 지방○○○○○ ○○○, 지방○○○○○ ○○○을 훈계하고(훈계)
- ②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 중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하며(시정)
-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처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라남도

훈계·주의요구

제 목 현장감독공무원 피복비 집행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해남군(해남읍, 삼산면, 화산면, 현산면, 송지면, 북평면, 북일면, 옥천면, 계곡면, 마산면, 황산면, 산이면, 문내면, 화원면)

훈 계 대 상 자 ① 해남군 ○○○○과 지방○○서기 ○○○

② 해남군 ○○○○과 지방○○서기 ○○○

③ 해남군 ○○○○과 지방○○서기 ○○○

내 용

1. 업무개요

해남군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시설부대비(401-03)목에서 “해남 ○○리 ○○○○○○ 및 ○○ ○○ ○○처리 공사 감독 요원 근무복 구입” 등 총 90건 62,227천원을 피복비로 집행하였다.

지방○○서기 ○○○은 2019. 0. 00.부터 2020. 00. 00.까지 ○○면 ○○팀에서 근무하였고, 지방○○서기 ○○○은 2020. 0. 0.부터 2021. 00. 00.까지 ○○면 ○○팀에서 근무하였으며, 지방○○서기 ○○○은 2019. 00. 00.부터 2020. 00. 00.까지 ○○면 ○○팀에서 근무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계약담

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13. 시설비 및 부대비편에 따르면 시설부대비(401-03)목에서 피복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한다고 되어있고, 공사기간(동일기간 다수현장 감독자에 대한 중복지급 제한), 구매대상 물품의 내용연수, 구매의 타당성(공사현장감독용 안전모, 안전화 등 실제 필요성), 가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시설부대비(401-03)목에서 피복비를 집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게만 공사기간, 내용연수, 타당성, 가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피복을 구입하여 지급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해남군(해남읍 등 14개 부서)은 [별표 1] “감독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부적정하게 지급한 피복비 명세”와 같이 공사 감독공무원으로 임명되지 않은 25명에게 최소 1건 200천원에서 최대 19건 8,081천원까지 총 79건 54,059천원의 피복을 부적정하게 구입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별표 1]의 79건 54,059천원의 피복비 지출 건 중 [별표 2] “공사 준공일 도래 등 부적정하게 구입한 피복비 명세”와 같이 준공일이 도래하거나 공사기간이 아닌 시기에 15명에게 최소 1건 200천원에서 최대 16건 5,881천원까지 총 44건 25,869천원의 피복을 부적정하게 구입하여 지급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해남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해남군수는

- ① 시설부대비(401-03)목에서 피복비를 준공일이 도래하거나 공사 기간이 아닌 시기에 총 2,000천원 이상 부적정하게 집행한 지방○○서기 ○○○, 지방○○서기 ○○○, 지방○○서기 ○○○을 훈계하고(훈계)
- ②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기간, 구매의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시설부대비를 합리적으로 집행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 [별표 2] 생 략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 ○○사업 보조사업 정산 및 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해남군(미래공동체과)

내 용

1. 업무 개요

해남군은 마을기업 육성을 위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표 1]과 같이 8개 마을기업에 장비 구입 및 신축 공사비 등으로 보조금 406,000천원을 지원·관리하고 있다.

[표 1] 마을기업 지원 현황(2019년~2020년)

(단위 : 천원)

연도	마을기업명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8개 마을기업	483,455	406,000	165,000	85,500	155,500	77,455
2019	○○○○○○○○○○조합 (대표 ○○○)	22,000	20,000	-	10,000	10,000	2,000
	○○○○○○○○○○법인 (대표 ○○○)	21,300	18,000	-	9,000	9,000	3,300
	○○○○○○○○○○회사 (대표 ○○○)	22,000	18,000	-	9,000	9,000	4,000
2020	○○○○○○○○○○회사 (대표 ○○○)	60,000	50,000	25,000	7,500	17,500	10,000
	○○○○○○○○○○회사 (대표 ○○○)	60,000	50,000	25,000	7,500	17,500	10,000
	○○○○○○○○○○법인 (대표 ○○○)	59,410	50,000	25,000	7,500	17,500	9,410
	○○○○○○○○○○법인 (대표 ○○○)	36,145	30,000	15,000	4,500	10,500	6,145
2021	○○○○○○○○○○조합 (대표 ○○○)	60,000	50,000	25,000	7,500	17,500	10,000
	○○○○○○○○○○법인 (대표 ○○○)	33,600	30,000	15,000	4,500	10,500	3,600
	○○○○○○○○○○법인 (대표 ○○○)	60,000	50,000	25,000	7,500	17,500	10,000
	○○○○○○○○○○법인 (대표 ○○○)	24,000	20,000	10,000	3,000	7,000	4,000
	○○○○○○○○○○법인 (대표 ○○○)	25,000	20,000	-	8,000	12,000	5,000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2. ○○○○ ○○사업 보조사업 정산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⁶⁾ V.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4]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편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금 정산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하며,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II 마을기업의 관리 2. 보조금 교부, 집행 및 정산편에 따르면 구체적인 내용은 「보조금법」과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 지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자체 조례(이하 “보조금 관련 법령”이라 한다)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 3. 사업별 예산편성·집행기준 편에 따르면 인건비(보수·일용임금)는 마을기업 사업비(보조금, 자부담)로 마을기업의 대표, 부회장, 총무 등 법인 등기부등본 상 이사, 감사 등 임원에게 보수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금 집행시 마을기업 임직원(직계존비속 포함)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르면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3조에 따른 실적 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 사용 증빙자료, 세

6) 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2019. 11. 6. 일부개정, 시행 2019. 11. 6.)

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등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사용내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감액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남군(미래공동체과)은 2020. 0. 00. 보조사업자인 ○○○○○○○○○○○○○○○○○조합(대표 ○○○)에 대하여 2019년 ○○○○ ○○사업 보조사업 정산검사를 하면서 [표 2]와 같이 ○○○○○○○○○○○○○○○○○조합(대표 ○○○)이 2019. 0. 00. 보조금 전용통장에서 현금 2,500,000원을 인출하여 노트북 1대(MacBook Pro 13형)를 구입한 후 2,29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사용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보조금 2,272,720원을 감액 조치 없이 부적정하게 정산하였다.

또한 법인등기부등본 상 임원에게는 인건비성 경비 지급이 불가하고 임원과는 거래할 수 없는데도 2020. 0. 00. 보조사업자인 보조사업자인 ○○○○○○○○○○○○○○○○○회사(대표 ○○○)에 대하여 2019년 ○○○○ ○○사업 보조사업 정산검사를 하면서 [표 2]와 같이 ○○○○○○○○○○○○○○○○○회사(대표 ○○○)의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감사로 등록되어 있는 임원 ○○○에게 2019. 00. 00. ○○○ ○○○ 구입비로 1,200,000원을 집행하였고, 같은 해 11. 28. 인건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집행하는 등 총 1,700,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는데도 보조금 1,545,460원을 감액 조치 없이 부적정하게 정산하였다.

[표 2] ○○○○ ○○사업 보조사업 부적정 정산 현황

(단위 : 원)

연도	마을기업명	부적정 정산액					
		총계	보조금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2개 마을기업	4,200,000	3,818,180	-	1,909,090	1,909,090	381,820
2019	○○○○○○○○○○○○○○○○조합 (대표 ○○○)	2,500,000	2,272,720	-	1,136,360	1,136,360	227,280
	○○○○○○○○○○○○○○○○회사 (대표 ○○○)	1,700,000	1,545,460	-	772,730	772,730	154,540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3. ○○○○ ○○사업 보조사업 중요재산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지방자치단체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

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 변경등기와 동시에 하되 다만, 지방보조금의 교부로 부동산의 등기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제3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중요재산의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의 현황에 해당 중요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II 마을기업의 관리 2. 보조금 교부, 집행 및 정산 ④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편에 따르면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보조금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그 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처분할 수 없고, 중요재산 처분 제한과 반환은 보조금 관련 법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중요재산은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항공기,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이며 보조금으로 구입한 자산성 물품으로 취득가액 5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등기를 하여 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부기등기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보조금으로 구입한 취득가액 500천원을 초과한 자산성 물품은 중요재산으로 관리하여 반기별로 중요재산의 현황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아야 하며, 중요재산의 현황을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남군(미래공동체과)은 2020. 00. 00. ○○○○○○○○○○○○○회사(대표 ○○○)가 ○○○○ ○○사업 보조금 50,000천원으로 ○○○ 신축공사를 완공하고도 20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도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등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표 3]과 같이 4개 마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한 건축물 등에 대하여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3] ○○○○ ○○사업 보조사업에 대한 부기등기 미처리 현황(2020년~2021년)

(단위 : 천원)

연도	마을기업명	부기등기 대상			
		사업명	사업비	(건축)연면적	설치장소
	4개 기업		155,000		
2020	○○○○○○○○○○○○○○회사 (대표 ○○○)	○○○ 신축공사	50,000	84.9㎡	해남군 ○○면 ○○○길 000
	○○○○○○○○○○○○○○회사 (대표 ○○○)	○○○○시설 신축공사	30,000	148.99㎡	해남군 ○○면 ○○길 000-00
	○○○○○○○○○○법인 (대표 ○○○)	○○○ 설치공사	20,000	300㎡	해남군 ○○면 ○○길 000-00
2021	○○○○○○○○법인 (대표 ○○○)	○○○ 설치공사	55,000	84㎡	해남군 ○○면 ○○길 00-00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2019년 ○○○○ ○○사업 보조사업자인 ○○○○○○○○○○○조합(대표 ○○○)이 보조금 17,600천원으로 ○○○○○○○○을 구입하는 등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별표]와 같이 5개 마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중요재산 19건 156,184천원을 취득하고도 20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보조사업자로부터 중요재산의 현황에 대하여 단 한 차례도 보고받지 않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 등 마을기업 보조사업 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해남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해남군수는

- ① ○○○○ ○○사업 보조사업 정산 시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3,818,180원을 회수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을 반기별로 마을기업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며,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② 앞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 ○○사업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상속재산 취득세 등 지방세 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해남군(재무과, 건설도시과)

내 용

1. 업무 개요

해남군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표 1]과 같이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를 추진하였다.

[표 1]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2020년~2022년)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2020	68,279	65,546	362	2,371
2021	96,253	93,675	271	2,307
2022	103,735	100,956	332	2,447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상속재산 등 취득세 부과 업무처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등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¹⁾ 및 제10조에 따르면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하는 자는

1) 제2항 :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며,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가설)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과세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남군(재무과)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표 2] 및 [별표 1] “취득세 미부과 세부 명세”와 같이 ○○○ 등 46건 상속재산에 대하여, ○○○ 등 21건에 대한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는 등 총 67건에 대하여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취득세 52,085천원을 부과하지 않아 공정한 과세원칙이 저해되고 지방세수 확보 기회를 상실되게 하였다.

[표 2] 취득세 미부과 현황(2020년 2월~2023년 1월)

(단위: 건, 천원)

세목	부과대상	건수	미부과 세액
		67	52,085
취득세	미신고 상속재산 취득세 추정	46	43,380
	미신고 가설건축물 취득세 추정	21	8,705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가산세 포함)

3.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등록면허세 부과 누락

가.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세법」 제24조에 따르면 등록을 하는 자 또는 면허를 받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 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에 따르면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신고를 수리할 경우에 면허를 발급받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면허 부여 시의 납세 확인을 위하여 면허부여기관은 면허증서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등록면허세의 납부처·납부금액·납부일 및 면허종별 등을 적은 후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지하수 굴착행위의 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 등록면허세 부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남군(재무과)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표 3] 및 [별표 2] “개인하수처리시설 등록면허세 미부과 세부 명세”와 같이 ○○○ 등 51건, 317천원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별표 3] “굴착행위 등록면허세 미부과 세부 명세”와 같이 (주)○○○○○○○○ 등 60건, 1,408천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어 공정한 과세원칙을 저해하고 있다.

[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등록면허세 미부과 현황(2020년~2022년)

(단위: 건, 천원)

세 목	부과대상	건수	미부과 세액
계		101	1,725
등록면허세	개인하수처리시설 추정	51	317
	지하수 굴착행위 신고 추정	60	1,408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가산세 포함)

또한 ○○○○과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지하수 굴착행위 신고 면허 등 면허 부여 및 변경 시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고 있는 등 등록면허세 과세자료를 재무과에 통보하지 않고 있어 지방세 세원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해남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해남군수는

- ① 부과 누락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178건 53,810,140원을 부과시키고(시정)
- ② 앞으로 ○○○○과는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할 시에는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재무과로 관련 과세자료를 누락 없이 제공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 [별표 3] 생략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도로점용료 등 세외수입 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해남군(민원토지과, 건축허가과, 안전교통과, 재무과, 농정과, 건설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화산면, 옥천면)

내 용

1. 업무 개요

해남군은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 신설·개축 등을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고, 사망자에 대한 체납 관리를 하고 있다.

2. 도로점용료 부과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도로법」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르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도로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점용료의 부과 징수시기는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도로점용 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인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도로점용료에 대하여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남군(화산면, 옥천면)은 ○○면 ○○리 000-00 외 3필지에 대하여 1년 이상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에게 2021년분 도로점용료 80천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별표 1] “도로점용료 미부과 명세”와 같이 도로점용료 22건 2,619천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3. 사망자에 대한 체납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민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997조에 따르면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42조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에 제2항1)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 정리를 하여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납부의무를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지방세를 부과하기 전에 대상자의 사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납세자의 사망 시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확보를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 시 시효완성정리를 하여 납부의무를 소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1)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정리보류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0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

그런데 해남군(안전교통과, 건설도시과)은 2018. 0. 0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를 부과하면서 2017. 0. 0. 사망한 ○○○에게 711천원을 부과하는 등 2018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별표 2]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중 사망자 명세”와 같이 8건 4,060천원을 사망자에게 부과하여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도 20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부과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민원토지과, 건축허가과, 안전교통과, 재무과, 농정과, 건설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는 국유재산대부료 등을 체납한 ○○○ 등 사망자 7건 12,413천원에 대하여 상속자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거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20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납세의무 승계, 시효완성 정리 등을 추진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해남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해남군수는 부과 누락된 도로점용료 22건 2,619,520원을 부과하고, 사망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 15건 16,473,490원을 부과취소, 납세의무 승계, 시효완성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2] 생략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세입 및 세출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해남군(민원토지과, 건축허가과, 총무과, 재무과, 농정과, 건설도시과, 산림공원과, 화산면, 북평면, 북일면)

내 용

1. 업무 개요

해남군은 모든 자금을 통합계좌에서 관리·운영하고, 입·출금이 제한되는公款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세입세출외현금을 운영하고 있다.

2.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지출)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회계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계좌 입금 및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운영비 중 일직비·숙직비를 지급하는 경우, 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무원의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밖에 경비의 용도상 현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은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3조 제3항에 따르면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할 때에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훈령 제37조2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은 원칙적으로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로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별표 2 지방자치단체 보통계금계좌 관리기준 2. 계좌운영·관리편에 따르면 개설된 계좌는 해당 목적대로만 운영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결제계좌는 일상경비출납계좌에서 카드사용대금만 입금받고 해당 신용카드사 계좌로 이체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훈령 제102조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그해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월 이내에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대가 등을 지급할 때에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고, 개설된 계좌는 해당 목적대로만 운영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서류를 갖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남군(민원토지과, 화산면, 북평면, 북일면)은 2021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표 1]과 같이 2022년 ○○○○○○○○ ○○ 우수기관 포상금 1,000천원을 군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서 민원토지과의 법인신용카드 결제계좌로 부적정하게 이체하였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며, 영수증 등 증명서류 없이 6회에 걸쳐 부적정하게 지출하였다.

[표 1]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출금한 세입세출외현금 현황

(단위 : 원)

부서명	구분	금액	보관·현금출금 통장 (현금 출금일)	사용목적	영수증 등 증명서류
계	6건				
○○○○과	2022년 ○○○○○○○○ ○○ 우수기관 포상금	1,000,000	법인카드결제계좌 000-00-000000 (2022.00.00.)	유공직원 격려금 지급	없음
○○면	2020년 ○○○ ○○○ ○○ 포상금	1,220,000	세입세출외현금계좌 000000-00-000000 (2022.00.00.)	설 명절 맞이 직원 선물세트 구입	없음
○○면	2016년 ○○○ ○○○ ○○○ 포상금	800,000	세입세출외현금계좌 000-0000-0000-00 (2021.00.00.)	유공직원 격려물품 구입 등	없음
○○면	2020년 ○○○ ○○○ ○○ 포상금	1,220,000	세입세출외현금계좌 000000-00-000000 (2021.00.00.)	직원 명절 선물세트 구입, 식대 등	없음
	2021년 ○○○ ○○○ ○○ 포상금	1,848,000	세입세출외현금계좌 000000-00-000000 (2022.00.00.)	직원 명절 선물세트 구입, 식대 등	없음
	2022년 ○○○ ○○○ ○○ 포상금	1,170,500	세입세출외현금계좌 000000-00-000000 (2023.00.00.)	직원 명절 선물세트 구입	없음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재무과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읍·면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그 해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아 제출받지 않았고,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통장 잔액이 일치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3. 세입세출외현금 세입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공공시설 손실부담,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증,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를 출납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청구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훈령 제64조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 소관 부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세입세출외현금(이자 포함)이 있을 때에는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개월 전까지 반환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납입된 금액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계약보증금 등 보관 시기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채주에게 보관금 반환청구 사실을 소멸시효 1개월 전까지 반환받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반환기간 경과 후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은 세입에 편입시켜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남군(건축허가과, 총무과, 재무과, 농정과, 건설도시과, 산림공원과)은 [별표] “반환기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명세”와 같이 2012. 11. 22. 예치한 일시보관금 2,485천원 등 총 29건 609,864천원에 대해 반환기간 경과 후 5년 동안 반환 청구가 없을 경우 세입에 편입하여야 하는데도 20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방치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해남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해남군수는

①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반환기간 경과 후 5년 이상 보관 중인 계약보증금 등 609,864,330원을 관련 절차에 따라 세입 조치하고(시정)

② 앞으로 세입세출외현금을 집행 시에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이체하고, 지방 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며, 영수증 등 지출 증명서류를 갖추어 처리하고, 결산 시 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자동차 관련 행정처분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해남군(안전교통과)

훈 계 대 상 자 ① 해남군 ○○○○과 지방○○주사 ○○○

② 해남군 ○○○○과 지방○○주사보 ○○○

내 용

1. 업무 개요

해남군은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화물·여객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의심신고 사항을 통보받아 조사 및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주사 ○○○은 2020. 0. 00.부터 2020. 0. 00.까지 ○○○○과에서 화물·여객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의심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지방○○주사보 ○○○는 2020. 0. 00.부터 2020. 0. 00.까지 ○○○○과에서 화물·여객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의심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유가보조금 의심신고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관할관청이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반환, 운송사업자의 지도·감독, 처분 등 유가보

조금 제도 운영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반기별로 제1항 각 호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 제23조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적발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1. 해당 주유·충전 내역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 2. 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 환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기 보조금에서 환수금액 차감,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연료비를 부담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환수한 유가보조금에서 그 자에게 다시 지급, 4. 필요할 경우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조치 등 행정상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유가보조금은 「지방세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고, 관할관청이 지급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결과를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규정 제29조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화물차주에 대하여 1. 화물차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의 환수, 2.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 환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기 보조금에서 환수금액 차감, 3.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관청에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거래를 유형별로 자동 추출하여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으로 통보받은 부정수급 의심되는 거래에 대하여 조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은 확인된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의 환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사 및 조치결과를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입력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남군(안전교통과)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별표 1]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으로 통보받은 의심거래 신고 명세”와 같이 41차례에 걸쳐 496건의 의심 거래신고를 제공받았으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또는 행정상 제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채 업무를 방치하였다.

3.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등 과태료 부과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의무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의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자동차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자동차 보유자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자동차 보유자에게 지체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류 제출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¹⁾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일정 기간²⁾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84조 등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60만원 이하의 과태료³⁾를 부과하도록 되어

1)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매월 3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내역(보험개발원 제공)을 해당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장은 해당 자동차 보유자에게 의무보험 등 가입명령서(또는 가입촉구서)를 발송

2) 일정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관련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별표 15의 2)을 말함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 : 2년(신조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 4년)
-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 2년) 등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내역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자동차 보유자에게 의무보험을 가입할 것을 명하고, 미가입한 일수를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지연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남군(안전교통과)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표] 및 [별표 2]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 과태료 부과 누락 명세”와 같이 ○○○ 소유의 00조 0000 차량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도 387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00나0000 차량 등 52대가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도 2,88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표]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누락 현황

(단위 : 원)

납부자명	차량번호	전 보험가입일	전 보험만료일	부과누락액	비고
○○○	00조0000	2019.00.00.	2020.00.00.	387,000	대인, 대물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해남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해남군수는

- 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조사 및 행정상 제재 등의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지방 ○○주사 ○○○, 지방○○주사보 ○○○를 훈계하고(훈계)
- ② 부과 누락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53건 3,267,000원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시정)

3)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별표2]

[별표 1] ~ [별표 2] 생략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국고보조금 등 반납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해남군(해양수산물, 농정과)

내 용

1. 업무 개요

해남군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지원사업 및 ○○○○○○○○지원사업 등 72개 사업, 344억원을 지원·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35조 제4항에 따르면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규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이 발생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세입고지서를 발급하고 민간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세입고지서 발급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식품사업자금 확정을 한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 반납을 명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치단체인 경우 집행잔액 및 이자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32조의6¹⁾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의8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1) 現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 1. 12. 제정, 2021. 7. 13. 시행) 제17조 제1항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VI.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2] 지방보조금의 반환 또는 상계에 따르면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보조사업을 확정 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반환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까지 세입고지서 발급을 요청하여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남군(해양수산물, 농정과)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여야 하는데도 [표] 및 [별표 1] “해양수산물분야 보조금 집행잔액 등 미반납 세부 명세”, [별표 2] “농업분야 보조금 집행잔액 등 미반납 세부 명세”와 같이 ○○○○○○○○지원 등 해양수산물분야 29개 사업 412,985,277원과 ○○○ ○○○○○○지원 등 농업분야 43개 사업 48,245,310원 등 총 72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461,230,587원을 20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반납하지 않고 있다.

[표] 해양수산물분야 및 농업분야 보조금 집행잔액 등 미반납 현황(2019년~2021년)

(단위: 원)

구분	총계	집행잔액			이자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72개 사업)	461,230,587	420,940,078	64,536,090	356,403,988	40,290,509	11,479,203	28,811,306
해양수산물분야 (29개 사업)	412,985,277	390,530,498	52,214,090	338,316,408	22,454,779	3,106,478	19,348,301
농업분야 (43개 사업)	48,245,310	30,409,580	12,322,000	18,087,580	17,835,730	8,372,725	9,463,005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해남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해남군수는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64,536,090원 및 이자 11,479,203원을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납하고,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56,403,988원 및 이자 28,811,306원을 전라남도에 반납하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2] 생략

전라남도

훈계·주의요구

제 목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해남군(해양수산과)

훈 계 대 상 자 해남군 ○○○○과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 개요

해남군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주사 ○○○는 2020. 0. 00.부터 2020. 0. 00.까지 ○○○○과에서 행정처분 등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2.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어업 등 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 행정처분의 요구기준 I 항 1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어업 등 행정처분과 해기사 행정처분의 요구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행정처분등의 기준이 각각 정지처분에 해당하면 그 정지처분 기간을 합산하여 어업 등 행정처분을 하거나 해기사 행정처분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칙 [별표] 어업 등 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 기준' II항 2호 가목 31.에 따르면 구획어업 중 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구역 외의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는 1차 위반은 30일 정지, 2차 위반은 45일 정지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행정처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행정처분 등의 기준이 각각 정지처분에 해당하면 그 정지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남군(해양수산물)은 2020. 0. 00.과 2020. 0. 00. ○○○이 ○○○○ ○○○로 각각 적발되어 그 정지처분 기간을 합산하여 60일의 어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도 [표 1]과 같이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각각 어업정지 30일, 어업정지 45일 총 72일의 어업정지 처분을 하여 어업정지 15일을 과다하게 처분하였다.

[표 1]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부적정 현황

선명	어선번호	어업허가	위반일	위반내용	행정처분	적법한 행정처분
○○○호 (○○○)	2000000- 0000000	○○○○ ○○○ 2019-000	2020.00.00.	○○○○ ○○ (수산업법 제41조 제3항 제1호)	어업정지 30일 (2020.00.00.)	어업정지 60일
			2020.00.00.	○○○○ ○○ (수산업법 제41조 제3항 제1호)	어업정지 45일 (2020.00.00.)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3. 해기사면허 행정처분 요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수산업법」 제71조 제1항 따르면 행정관청은 어업종사자나 어획물운반업종사자가 이 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이 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기사 면허의 취소·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관할 행정청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어업 등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기사 행정처분의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어업 등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고,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기사 면허의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남군(해양수산물)은 [표 2]와 같이 2020. 00. 0. ○○○ ○○ 등 위반으로 적발된 ○○○에 대하여 2021. 0. 0. 어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하면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기사 면허의 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지 않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2] 해기사 행정처분 미요구 현황

어선명	어선번호	어업허가	적발내용 (적발일)	어업 행정처분 (처분일)	부적정내용
○○○ (○○○)	00000000- 00000000	○○○○ 2020-000	○○○ ○○ 등 위반 (2020.00.00.)	어업정지 30일 (2021.00.00.)	해기사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미요구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해남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해남군수는

- ① 수산관계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지방 ○○주사 ○○○를 훈계하고(훈계)

② 앞으로 수산업법을 위반할 시에는 수산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기사 면허의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어업정지 처분을 하는 등 행정처분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농업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사후관리 등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해남군(화산면, 송지면, 옥천면, 계곡면, 마산면, 산이면)

내 용

1. 업무 개요

해남군은 농업법인 등이 농업경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면 영농계획서 등을 검토하고 신청농지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2. 농업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사후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농지법」 제3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에 대하여 확인과 심사를 할 경우 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농업경영을 위장할 목적으로 취득 농지에 수목·묘목 등 다년생식물 등을 식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농업법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시 법인 등기

사항증명서 상 목적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서 정한 사업범위¹⁾를 벗어나면 해당 법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 실시로 투기 등 매매거래 목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자격증명을 발급하며, 이 경우 농지의 소유권 취득 전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 변경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11조에 따르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을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부동산 매매업 등 사업범위 외 사업이 명시된 농업법인에 대하여는 농지의 소유권 취득 전 등기사항을 변경하였는지를 일정 기간을 두고 행정정보이용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매년 실시하는 농지 이용실태조사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남군(옥천면, 계곡면, 마산면, 산이면)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면서 [별표] “농지 취득한 농업법인 등기사항을 미변경한 법인 명세”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법인 등 4개 법인이 9필지, 49,122㎡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고 농지 소유권 취득 전 등기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20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사업범위 외 사업을 등기사항에 포함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3.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1) (영농조합법인 사업범위)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농지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대별로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면적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은 새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농지취득자(신청인)로부터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하여 그 세대원을 확인하고, 농지원부와 기 발급한 현황을 입력·관리하고 있는 새올시스템을 조회하여 신청면적과 세대원 전부가 기소유면적의 합한 면적을 확인하여 1,000㎡ 이상에 해당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남군(화산면, 송지면)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1,000㎡ 이상의 농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는데도 ○○도 ○○시 ○○구 ○○로 000에 거주하는 ○○○에게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1,059㎡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등 [표 2]와 같이 2세대의 소유 상한 면적 1,000㎡를 초과한 3필지, 2,331㎡의 농지에 대하여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2]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1,000㎡ 이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적정 발급 현황

(단위 : ㎡)

연번	성명	주소	발급일자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발급면적
계	2세대					3필지			2,331
1	○○○	○○도 ○○시 ○○구 ○○로 000,000동 000호	2021.00.00.	○○면	○○리	000-0	전	1,412	1,059
2	○○○	○○○도 ○○시 ○○구 ○○○로 00,000동 0000호	소계			2필지			1,272
			2022.00.00.	○○면	○○리	000-0	전	872	872
			2022.00.00.	○○면	○○리	000	전	400	400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해남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해남군수는 부동산 임대업 등 목적 외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농업법인에 대해서 등기사항을 변경하도록 하고, 2세대가 취득한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에 대하여 휴경 등 농지 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면 청문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생 략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지원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해남군(환경과)

내 용

1. 업무개요

해남군은 1997. 8. 25. 해남읍 ○○길 00-000 일원에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승인받아 20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표 1]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

[표 1] 해남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현황

처리시설 명	시설규격 또는 처리능력	처분대상 폐기물 종류	처분예상량 (톤/년)	방지시설
해남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 부지면적 : 95,117㎡ - 매립면적 : 46,108㎡ - 매립용량 : 282,632㎡	생활폐기물	10,000	- 침출수처리시설(50㎡/일) · 생물학적 + 화학적 처리
해남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5톤/일 (1,042kg/hr)	생활폐기물	7,500	- SNCR(무촉매반응) · 준건식반응탑 · 활성탄분무시설 · 여과집진시설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 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의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

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지원협의체는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제8조에 따른 가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6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¹⁾을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그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 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따르면 법 제26조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의 조사 및 횟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표 2]와 같이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1)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 조성면적 9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또는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 해남군의 경우 폐기물 매립시설은 95,117제곱미터이고, 폐기물 소각시설은 1일 처리능력 25톤

[표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 기준 현황

시설종류	조사분야	조사항목	조사주기	조사횟수
1. 매립시설	가. 대기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대기환경기준항목(악취 포함)	3년	4회 이상
	나. 소음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소음환경기준항목	3년	4회 이상
	다. 수질	1) 하천, 지하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하천수수질환경기준항목	3년	4회 이상
		2) 호소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호소수질환경기준항목		
		3) 해역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해역수질환경기준항목		
	라. 토양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의 토양오염물질	3년	4회 이상
2. 소각시설	가. 대기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대기환경기준항목	3년	4회 이상
	나. 소음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소음환경기준항목	3년	4회 이상
	다. 수질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수질환경기준항목	3년	4회 이상

자료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 일부 발췌

한편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르면 군수는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별표 3의 지원사업²⁾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민지원기금으로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 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남군(환경과)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등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 후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

2)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폐기물촉진법 시행령 별표 3)

1. 소득증대사업 : 농림수산업시설(공동 영농·영어시설, 농로, 임도, 상공업시설(공용창고, 구판장 등), 관광산업(휴양소, 토산물 판매장 등)
2. 복리증진사업 : 의료시설, 토로시설, 상하수도시설, 교육·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환경·위생시설, 운동·오락시설, 전기·통신시설 등
3. 육영사업 : 컴퓨터·피아노 등 교육기자재 지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여야 하는데도 1997. 8. 25. 군 생활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승인 이후인 1998년부터 2023년 1월까지 [별표]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명세”와 같이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지도 않았고,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지 않은 채 군 예산으로 2,319백만원을 시설비, 기타보상금 등으로 편성하여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또한 주변 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하는데도 1998년부터 20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해남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해남군수는 앞으로 주변 영향지역 환경상 영향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주변 영향지역 지원사업은 출연금,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며,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를 통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라남도

훈계·주의요구

제 목 석유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및 고발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해남군(경제산업과)

훈 계 대 상 자 해남군 ○○과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 개요

해남군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를 통보 받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 처분 및 사법처분을 위한 고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주사 ○○○은 2020. 0. 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석유사업법 위반자 행정 및 고발업무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2. 석유판매업자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누락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석유사업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 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한국석유관리원에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9조 제2항 4호 및 제3항에 따르면 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석유판매업자, 석유비축대행업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시행령 별표 6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 기준은 주 단위 보고는 최근 6개월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표 1]과 같이 1차 경고,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4차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석유판매업자 과태료 부과 기준 현황

위반행위	근거법 조문	과태료금액			
		1차	2차	3차	4차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1) 주 단위 보고의 경우	법 제49조 제2항 제4호	경고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자료 :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과태료 부과 기준 일부 발췌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은 해남군에 소재한 주유소가 주간 거래상황기록을 정해진 기일 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 ‘주간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미보고 현황’을 해남군에 공문으로 통보하고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관내 석유판매업자가 한국석유관리원에 주간보고를 하지 않아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주간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미보고 현황’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등을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남군(경제산업과)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주간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미보고 석유판매업자에 대해 경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데도 2021. 0. 00.부터 2022. 0. 00.까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주유소 등 4개소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주간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미보고 현황’을 통보받고도 [표 2]와 같이 20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경고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표 2] 석유판매업자 주간보고 미이행 행정처분 미이행 현황

석유판매업자명	적발일	누락 행정처분	비고
○○○○주유소	2021.00.00.	경고	1차 적발
○○○○주유소	2022.00.00.	경고	1차 적발
○○○○주유소	2022.00.00.	경고	1차 적발
○○주유소	2022.00.00.	경고	1차 적발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주유소의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에 2021. 0. 00. 주간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를 보고하지 않아 최근 6개월 이내 2차 적발되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표 3]과 같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채 경고처분을 하여 행정처분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3] 석유판매업자 부적정 행정처분 현황

석유판매업자명	적발일	실제 행정처분	적정한 행정처분	비고
○○○○주유소	2021.00.00.	경고	과태료 50만원	최근 6개월 이내 2차 적발

제출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3. 석유판매업자 위반사업자 고발 조치 미실시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는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행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되어 있다.

그리고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에 따르면 제39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관내 석유판매업자가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10호를 따라 법령상 허용된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남군(경제산업과)은 2020. 0. 00.부터 같은 해 0. 00.까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한 석유판매업자 5개소를 통보받았는데도 [표 4]와 같이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 5개소에 대해 20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표 4] 석유판매업자 고발 조치 미이행 현황

석유판매업자명	한국석유관리원 통보일	위반법령	위반내용
○○주유소	2020.00.00.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10호 및 시행령 제43조제1항1호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
○○○○주유소	2020.00.00.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10호 및 시행령 제43조제1항1호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
○○○○○○○○소	2020.00.00.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10호 및 시행령 제43조제1항1호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
○○○○○○○○소	2020.00.00.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10호 및 시행령 제43조제1항1호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
○○○주유소	2020.00.00.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10호 및 시행령 제43조제1항1호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해남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해남군수는

- ①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석유판매업자에게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누락하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지방○○주사 ○○○를 훈계하고(훈계)
- ② 앞으로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위반내용이 통보되면 「석유사업법」에 따른 적정

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징계·훈계·주의요구

제 목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해남군(건설도시과)

징 계 대 상 자 ① 해남군 ○○○○과 지방○○주사 ○○○

② 해남군 ○○○○과 지방○○주사 ○○○

징 계 의 종 류 경징계

훈 계 대 상 자 ① 전라남도 ○○○○과 지방○○주사보 ○○○

② 해남군 ○○과 지방○○주사보 ○○○

③ 해남군 ○○과 지방○○서기 ○○○

내 용

1. 업무 개요

해남군은 군민들이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및 신고를 수리하고 관정의 규모별로 수질검사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주사 ○○○은 2020. 0. 0.부터 2021. 00. 00.까지 ○○○○과 ○○○○팀에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 업무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지방○○주사 ○○○은 2022. 0. 0.부터 2023. 0. 00.까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사후관

리 업무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지방○○주사보 ○○○은 2020. 0. 0.부터 2020. 00. 00.까지 ○○○○과 ○○○○팀에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 업무담당자로 근무하였고, 지방○○주사보 ○○○은 2021. 0. 0.부터 2021. 0. 00.까지 ○○○○과 ○○○○팀에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 업무담당자로 근무하였으며, 지방○○서기 ○○○은 2021. 0. 0.부터 2022. 0. 00.까지 ○○○○과 ○○○○팀에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 업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연장허가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제7조 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면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가 허가·인가 등이 취소, 개발·이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일정한 기간을 두고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전남도는 2020. 0. 00. 해남군 정기종합감사 결과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연장허가 업무처리 부적정’을 지적하면서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 허가를 조치하도록 훈계 및 시정요구 처분하였다.

따라서 해남군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도록 미리 고지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남군(건설도시과)은 2017. 0. 0.부터 2023. 0. 00.까지 [별표 1] “지하수 허가 유효기간 도과 및 사전안내 미이행 명세”와 같이 ○○○○ 생활용수 등 94건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20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연장신청을 하도록 미리 고지하지도 않았고, 원상복구를 명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어 지하수 사후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로부터 2020. 0. 00. 해남군 정기종합감사결과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연장허가 업무처리 부적정’을 지적하면서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 허가를 조치하도록 시정요구 처분받고도 20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 지하수 영향조사 없이 지하수 사용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어 지하수가 부적정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지하수 수질검사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표]와 같이 수질검사를 검사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¹⁾의 수질검

1) 지하수 수질검사 전문기관

1. 지하수조사전문기관

2.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

사를 받아야 하고, 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표] 지하수 관련 수질검사 대상 및 주기 현황

용도	구분	수질검사주기
음용수	모든시설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인 경우 : 2년마다 1회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인 경우 : 3년마다 1회
생활용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3년마다 1회
공업용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3년마다 1회
농업·어업용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	3년마다 1회

자료 : 「지하수법」 일부 발췌

또한 같은 법 39조에 따르면 지하수 관련 수질검사 대상자가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전남도는 2020. 0. 00. 해남군 정기종합감사결과를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미이행’을 지적하면서 허가 및 신고대상 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훈계 및 시정요구 처분하였다.

따라서 해남군은 수질검사대상에 해당하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수질검사주기에 따라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하수 수질검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남군(건설도시과)은 2020년 2월부터 20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별표 2] “지하수 수질검사 미이행 명세”와 같이 수질 검사대상 1,532개소가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채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특히 전남도로부터 2020. 0. 00. 해남군 정기종합감사결과 ‘지하수 정기 수질

3.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4.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도농업기술원

6.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검사기관

검사 미이행'을 지적받으면서 허가 및 신고대상 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시정요구 처분을 받았는데도 20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4. 업무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

가. ○○○의 경우

지방○○주사 ○○○는 2020. 0. 0.부터 2021. 00. 00.까지 ○○○○과 ○○○○팀에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 업무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지하수법」 제7조에 지하수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연장하려면 만료 30일 전까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연장허가 신청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허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연장절차, 허가만료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하는데도 2020. 0. 0.부터 2021. 00. 00.까지 ○○○○ 생활용수 등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가 만료되었는데도 사전안내, 원상복구 명령을 실시하지 않아 관련 업무를 방치하였다.

또한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수질검사를 검사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하수 전문기관 검사를 받아야 하고, 군수는 수질 기준 부적합 시 지하수 이용 중지 또는 수질개선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수질검사를 미 실시할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2020. 0. 0.부터 2021. 00. 00.까지 정기 수질검사대상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특히 전남도로부터 2020. 0. 00. 해남군 정기종합감사결과 '지하수 정기 수질 검사 미이행'을 지적받으면서 신고대상 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시정요구 처분받았는데도 2020. 0. 0.부터 2021. 00. 00.까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되지 않은 채 업무를 방치하였다.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지방○○주사 ○○○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 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의 경우

지방○○주사 ○○○은 2022. 0. 0.부터 2023. 0. 00.까지 ○○○○과 ○○○○팀에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 업무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지하수법」 제7조에 지하수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연장하려면 만료 30일 전까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연장허가 신청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허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연장절차, 허가만료 사항을 미리 알려야 했는데도, 2022. 0. 0.부터 2023. 0. 00.까지 ○○○○ 생활용수 등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가 만료되었는데도 사전안내, 원상복구 명령을 실시하지 않아 관련 업무를 방치하였다.

또한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수질검사를 검사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하수 전문기관 검사를 받아야 하고, 군수는 수질 기준 부적합 시 지하수 이용 중지 또는 수질개선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수질검사를 미 실시할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어야 하는데도 2022. 0. 0.부터 20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정기 수질검사대상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특히 전남도로부터 2020. 0. 00. 해남군 정기종합감사결과를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미이행’을 지적받으면서 신고대상 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시정요구 처분받았는데도 2022. 0. 0.부터 20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되지 않은 채 업무를 방치하였다.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지방○○주사 ○○○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 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관계기관 의견 해남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징계요구 양정

2020년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에 지적을 받고도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사후 관리를 부당하게 처리한 지방○○주사 ○○○, 지방○○주사 ○○○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 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해남군수는

- ① 2020년 정기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도 지하수 개발·이용자 연장허가 업무와 지하수 수질검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지방○○주사 ○○○, 지방○○주사 ○○○을 경징계하고(징계)
- ② 지하수 개발·이용자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지방○○주사보 ○○○, 지방○○주사보 ○○○, 지방○○서기 ○○○을 훈계하고(훈계)
- ③ 앞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허가를 받은 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 미리 안내를 실시하여 지하수 허가를 연장하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하도록 하고,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대상이 수질검사를 주기에 따라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 [별표 2] 생 략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사립미술관 운영 보조금 관리업무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해남군(문화예술과)

훈 계 대 상 자 ① 해남군 ○○○○○과 지방○○주사 ○○○

② 해남군 ○○과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 개요

해남군은 문화·예술의 발전, 군민의 문화향유를 위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표 1]과 같이 66백만원을 지원·관리하고 있다.

[표 1] ○○미술관 운영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사업기간	보조금			비고
		계	도비	군비	
합계		66,000	19,800	46,200	
2020	2020.00.00.~00.00.	22,000	6,600	15,400	
2021	2021.00.00.~00.00.	22,000	6,600	15,400	
2022	2022.00.00.~00.00.	22,000	6,600	15,400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주사 ○○○은 2020. 0. 0.부터 2020. 00. 00.까지 ○○○○과에서 사립미술관 운영 보조금 관리업무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지방○○주사 ○○○은 2021. 0. 0.부터 2021. 00. 00.까지 사립미술관 운영 보조금 관리업무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2. ○○미술관 보조금 정산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재정법²⁾」 제32조의6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³⁾」 VI.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①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편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 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 실적 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3조에 따른 실적 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르면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

2) 구)지방재정법(시행 2019. 1. 17.)

3) 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2019. 11. 6.)

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제출된 보조금 실적보고서를 법령 및 교부 결정의 내용 등 따라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남군(문화예술과)은 2020년과 2021년 ○○미술관 운영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하면서 [표 2]와 같이 교부결정 시 제출된 학예사 명단(○○○, ○○○)과 다른 직원(○○○)이 2020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021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근무하였는데도 시정 등의 조치 없이 부적정하게 정산하였다.

[표 2] ○○미술관 학예사 근무 현황(2020년~2021년)

(단위 : 천원)

회계연도	교부결정시 학예사 명단	실제 학예사 근무 현황	부적정 정산 현황
계			(인건비) 35,200
2020	○○○	- ○○○ : 2020.00.~2020.00. ○○○4): 2020.00.~2020.00.	(인건비) 13,200
2021	○○○	- ○○○ : 2021.00.~2021.00.	(인건비) 22,000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3. 보조금 반납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⁵⁾」 V.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④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편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고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당초 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

4) ○○○ : 학예사자격증 없음(준학예사 시험 확인서 소지)

5) 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2019. 11. 6.)

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 후에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에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사업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해남군은 2020. 0. 00. 보조사업자인 ○○미술관에 대하여 2020년 사립미술관 운영 보조금 22,000천원을 교부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따라서 해남군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고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하며 위반한 집행액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남군(문화예술과)은 보조사업자인 ○○미술관이 2020. 0. 00. [표 3]과 같이 보조금 4,400,000원을 집행하면서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일 2020. 0. 00. 이전인 2020년 1월분 인건비 2,200,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되었는데도 2,200,000원을 환수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

[표 3] 보조금 부적정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보조금 교부일	지출일	집행내역	지출액
2020.0.00.	2020.00.00.	인건비 1월(○○○)	2,200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해남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해남군수는

① 사립미술관 운영 보조금 정산 및 반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지방○○주사 ○○○, 지방○○주사 ○○○을 훈계하고(훈계)

②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업비 2,200,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해남군(안전교통과)

내 용

1. 업무개요

해남군은 2022. 1. 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시행과 관련하여 2022. 2. 1.부터 20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구체적인 사항을 총괄·관리하고 있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업무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르면 경영책임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며,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

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 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해남군(안전교통과)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지 않고, 2021년 3월 ○○과장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지정·관리¹⁾ 하다가 2022년 11월 해남군 조직개편²⁾으로 중대재해처벌 법 업무가 ○○○○과로 이관됨에 따라 ○○○○과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었으며, 2023. 0. 00.에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를 안전 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변경³⁾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중대산업재해 대비 대응 시나리오 미작성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8호에 따르면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와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및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며,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검토하고

1) 총무과-0000(2021. 0. 00.)

2) 해남군 훈령 제550호(2022. 11. 15.)

3) 안전교통과-00000(2023. 0. 00.)

조치계획을 개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며,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검토하고 조치계획을 개선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해남군(안전교통과)은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매뉴얼은 2022. 0. 00. 마련하였으나, 20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지 않았고,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아서 문제점을 검토하지 못하였고 조치계획도 개선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와 급박한 위험 발생 시 준비된 비상 조치계획 및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재해발생 초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할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해남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해남군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며,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며,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검토하고 조치계획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재해영향평가등의 관리책임자 지정·통보 등 업무 처리 부적
정

관계기관(부서) 해남군(안전교통과)

내 용

1. 업무개요

해남군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¹⁾(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해당 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조의2 및 시행규칙 제1조의5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개

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재해영향평가 : (면적) 5만m² 이상, (길이) 10km 이상, 소규모재해영향평가 : (면적) 5천m²이상 5만m² 미만, (길이) 2km 이상 10km 미만

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79조 및 시행령 제75조에 따르면 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와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준공 또는 중지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²⁾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리책임자 지정 및 착공·준공 통보를 하여야 하고, 협의권자는 관리책임자 지정 및 착공·준공 통보를 기한 내 하지 않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해남군(안전교통과)은 20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별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부적정 명세”와 같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받고 공사를 시작한 ○○○ 정비사업 등 20건 중 단 한차례도 관리책임자 지정 및 착공 통보를 하지 않았으며, ○○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10건은 준공 통보를 하지 않고 사업을 완료하였는데도 사업시행자에게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각종 개발사업 등에 따른 위험성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가 절차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4]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관계기관 의견 해남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해남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리책임자 지정 및 착공·준공 통보를 하여야 하고, 협의권자는 관리책임자 지정 및 착공·준공 통보를 기한 내 하지 않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정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생 략

전라남도

훈계·주의요구

제 목 지방재정 투자심사 미실시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해남군(안전교통과, 문화예술과)

훈 계 대 상 자 ① 해남군 ○○면 지방○○사무관 ○○○

② 해남군 ○○면 지방○○사무관 ○○○

내 용

1. 업무개요

해남군은 신규 일반투자사업에 대하여 일정 규모¹⁾ 이상의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해남군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 조성 등 문화예술 공간 조성을 위해 ○○ ○○ ○○○○○○ 조성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총사업비 101.6억원으로 수립²⁾하였고 [표 1]과 같이 관내 폐교 3개소에 대해 30억원의 예산을 편성 후 매입하였다.

[표 1] 폐교 매입 현황(2020년 2월 ~ 2023년 1월)

(단위 : 백만원)

1) (일반투자사업 기준) ① 자체심사 : 시·군의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② 시·도의뢰심사 : 시·군의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③ 중앙의뢰심사 : 시·군의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2) 해남군 문화예술과-0000(2019. 0. 00.) 관내 폐교를 활용하여 문화예술인을 위한 미술관, 박물관, 공예촌 등 ○○○ ○○○ 조성을 위해 폐교 3개소(○○○초, ○○초, ○○○○교) 매입비 3,005백만원이 포함됨(2020년 본예산 반영)

연번	폐교명	위 치	사업량	매입비	매입기간	투자심사	예산반영
계	3개소			3,005			
1	○○ ○○교	○○면 ○○리 00-0	토지 2필지 건물 10동	843	2019.00.00. 2020.00.00.	미 실시	2020년 본예산
2	○○ ○○초	○○면 ○○리 000	토지 8필지 건물 4동	1,339	2019.00.00. 2020.00.00.	"	"
3	○○ ○○○○교	○○면 ○○리 000	토지 1필지 건물 5동	823	2019.00.00. 2020.00.00.	"	"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해남군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시가지 주차 환경개선으로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표 2]와 같이 해남군 관내에 총 152.6억원의 예산을 편성·집행(예정)하여 공영주차장 10개소를 조성하였거나 추진(계획) 중에 있다.

[표 2] 해남군 공영주차장 조성 현황(2020년 2월 ~ 2023년 1월)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개소	10	3	3	2 (조성 중)	2 (행정절차 이행 중)	
예산	15,267	2,923	5,100	4,890	2,354 (편성 예정)	추경예산 포함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사무관 ○○○는 2020. 0. 0.부터 2020. 00. 00.까지 ○○○○과에서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한 폐교 매입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지방○○사무관 ○○○은 2019. 0. 0.부터 2020. 00. 00.까지 ○○○○과에서 공영주차장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2.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한 폐교 매입 전남도 투자심사 미 실시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투자심사를 하여야 하고, 시·군의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의 신규 일반투자사업은 자체 투자심사를, 시·군의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 일반투자사업은 시·도에 투

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이하 “투자심사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르면 심사대상의 총사업비는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등 투자사업 관련 모든 경비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물의 기능이 상호 연결되거나 연계성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1건으로 수립하여 심사기관에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신규 일반투자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총사업비가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이면 전라남도 투자심사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남군(문화예술과)은 2019. 0. 00. 관내 폐교 3개소에 대한 매입비 3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01.6억원으로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전남도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고, 2019년 7월 해남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사유로 같은 해 7월부터 2020년 3월까지 30억원의 예산(2020년 본예산)을 편성하여 폐교 3개소를 매입하였다.

한편 이번 종합감사기간(2023. 3. 2. ~ 3. 10.) 중 폐교 3개소에 대한 운영 및 활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사진]과 같이 2020년 3월 매입한 폐교 3개소 모두가 20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약 3년 동안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었다.

[사진] 해남군 매입 폐교(3개소) 방치 전경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폐교 3개소 중 2개소(○○ ○○초, ○○ ○○교)는 아직까지 폐교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활용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고, 1개소(○○ ○○교)는 2023년 3월에서야 해남 ○○○ ○○○ ○○ 기본계획 수립 용역³⁾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로 인하여 폐교 3개소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30억원의 예산을 무분별하게 투자함으로써 2020년 3월부터 20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매입한 폐교를 약 3년 동안 방치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저하와 투자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

3. 해남군 관내 공영주차장 자체 투자심사 미실시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투자심사를 하여야 하고, 시·군의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의 신규 일반투자사업은 자체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투자심사 매뉴얼」에 따르면 심사대상의 총사업비는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등 투자사업 관련 모든 경비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물의 기능이 상호 연결되거나 연계성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1건으로 수립하여 심사기관에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관내 ○○○○○○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면서 시설물의 기능이 상호 연계성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수립한 건별 사업계획의 총사업비 규모가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이면 군 자체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남군(안전교통과)은 2018년부터 2023년 1월까지 관내 공영주차장

3) (용역비) 49백만원, (용역기간) 2023. 0. ~ 0.

조성계획 7건⁴⁾(10개소, 152.6억원)을 수립하면서 건별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3건⁵⁾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자체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

또한 [표 3]과 같이 공영주차장 조성 개소당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읍 ○○○(구 ○○○○○) 등 4개소만 자체 투자심사를 받았고, 나머지 ○○면사무소 옆 등 6개소(58.7억원)는 건별 사업계획 또는 개소당 사업비가 20억원이 안된다는 사유로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채 주차장을 조성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다.

[표 3] 해남군 공영주차장 조성 및 투자심사 실시 현황(2020년 2월 ~ 2023년 1월)

(단위 : 백만원)

연도	공영주차장명	위 치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계획 수립일	투자심사일	예산반영
계	10개소		15,267				
2020	○○면 (○○○소 옆)	○○면 ○○리 000-0 등	670	2019.00.00. 2020.00.00.	2018.00.00.	미실시	2019 본예산
"	○○0 (○○○@ 앞)	○○읍 ○리 000-0 등	653	2020.00.00. 2020.00.00.	2019.00.00.	미실시	2019 2회추경 2020 본예산
"	○○0 (○○○○○○○)	○○읍 ○○리 000 등	1,600	2019.00.00. 2020.00.00.	2019.00.00.	미실시	2020 본예산
2021	○○0 (구 ○○○○○○)	○○읍 ○○리 0-0 등	1,500	2020.00.00. 2021.00.00.	2019.00.00.	2019.00.00. (30억원)	2020 본예산
"	○○ (구 ○○○○)	○○읍 ○○리 000-0 등	1,500	2021.00.00. 2022.00.00.			
"	○○0 (구 ○○○○ 뒤)	○○읍 ○○리 00 등	2,100	2020.00.00. 2021.00.00.	2019.00.00.	2020.00.00.	2020 본예산 2020 1회추경
2022	○○지구	○○읍 ○○리 00-0 등	4,293	실시설계중	2021.00.00.	2021.00.00.	2022 본예산
"	○○면 ○○	○○면 ○리 00-0 등	597	"	2021.00.00.	미실시	2023 본예산
2023	○○	○○읍 ○○리 00-0 등	1,178	군관리계획 변경 중	2022.00.00.	미실시	군관리계획 변경 후 예산편성 예정
"	○○	○○읍 ○○리 0-0 등	1,176	"	2022.00.00.	미실시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연도별 조성계획을 살펴본 결과 2019년에는 2018. 00. 00.과 2019. 0.

4) (2019년) 3건, (2021년) 2건, (2022년) 3건

- ① 환경교통과-00000(2018.00.00.) 총사업비 41.5억원, 3개소(○○○○소, ○○○○ 앞, ○○○○○소 인근)
- ② 환경교통과-0000(2019.0.00.) 총사업비 35.3억원, 3개소(읍 ○○○ 부근, ○○○아파트 앞, ○○ 앞)
- ③ 환경교통과-000000(2019.00.0.) 총사업비 57.3억원, 5개소(읍 ○○○ 부근, ○○○아파트 앞, ○○ 앞)
- ④ 환경교통과-00000(2021.0.00.) 총사업비 38억원, 1개소(읍 ○○리)
- ⑤ 환경교통과-00000(2021.0.00.) 총사업비 13.3억원, 3개소(○○면 ○○리, ○○면 ○○리, ○○면 ○○리)
- ⑥ 환경교통과-00000(2022.0.0.) 총사업비 11.8억원, 1개소(읍 ○○리)
- ⑦ 환경교통과-000000(2022.0.00.) 총사업비 11.7억원, 1개소(읍 ○○리)

5) ① 환경교통과-00000(2018.00.00.), ② 환경교통과-0000(2019.0.00.), ③ 환경교통과-000000(2019.00.0.)

00. 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개소당 사업비가 20억원이 안되는 공영주차장 2개소⁶⁾와 2019. 00. 0. 사업계획 수립 시 포함된 1개소⁷⁾에 대하여 자체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고, 2021년에도 2019년과 동일하게 2021. 0. 00.과 0. 00. 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1개소⁸⁾에 대해 자체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채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2022년에는 2022. 0. 0.과 0. 00. 별도로 수립한 사업계획 수립 시기가 3개월 이내이고 공영주차장 조성 위치가 동일지역(○○읍 일원)인 점을 고려하면 1건의 사업(총사업비 23.5억원)으로 자체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채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⁹⁾를 진행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투자심사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재정 패널티 부과를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해남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해남군수는

- 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폐교 매입을 추진한 지방○○사무관 ○○○와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지방○○사무관 ○○○을 훈계하고(**훈계**)
- ②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등에 따라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6) ① ○○○면사무소 옆(670백만원), ② ○○○읍 ○리 0(653백만원)

7) ○○○읍 ○○ 0(1,600백만원)

8) ○○○면 ○○(597백만원)

9) 공영주차장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 의뢰(해남군 환경교통과-000000(2022.0.00.), 안전교통과-0000(2023.0.00.))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정산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해남군(재무과)

내 용

1. 업무 개요

해남군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 ○○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13건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준공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품목·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공사, 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추진한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 시 반영한 국민건강보험료 등과 공사 물량에 대한 물가 변동 적용 금액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 후 정산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해남군(재무과)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표]와 [별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미정산 세부 명세 ”와 같이 총 13건의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대가를 지급하면서 국민건강보험료 등과 공사 물량에 대한 물가 변동 적용 금액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아 41,200천원이 과다 지급되었는데도 20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정산 실시 현황(2020년 2월~2023년 1월)

(단위 : 천원)

사업건수	계약금액(당초)	E/S ¹⁾ 금액	E/S 정산금액	미정산액	비 고
13	25,015,065	778,455	737,255	41,200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사업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13건의 계약상대자에게 41,200천원의 예산이 과다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해남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해남군수는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사업에 대해 준공 시 정산을 하지 않아 과다 지급한 41,200,000 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1) E/S(Escalation - 물가변동)

[별표] 생 략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지장물(지장전주) 이설공사비 부가가치세 지급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해남군(건설도시과)

내 용

1. 업무개요

해남군은 2018년부터 2023년 1월까지 ○○ ○○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총 29개 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지구내 편입되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이전 비용을 지급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¹⁾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²⁾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임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³⁾ 또는 용역⁴⁾의 공급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

1) 「토지보상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토지 등”이란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임목,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음

2) 「토지보상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음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함

4)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함

제1항 각 호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것과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국세청 훈령) 4-0-1 제1항에 따르면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소유 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등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감사원 심사 결정(2012년 감심 제147호⁵⁾)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부지 내에 정착한 물건(지장전주 등) 등을 소유자에게 이전토록 하고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급하는 금전은 같은 법 제75조 제1항에 따른 이전비로서 손실보상금에 해당하고, 이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거래인 용역의 공급 즉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⁶⁾⁷⁾

따라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전하게 되는 지장물에 대한 이전비 보상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시행자는 지장물의 소유자(관리자)가 이전비를 청구할 때에 청구내역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남군(건설도시과)은 2018년부터 2023년 1월까지 [표] 및 [별표] “지장물 이설공사비 중 부가가치세 지급 부적정 명세”와 같이 총 29개 사업에서

5) 한국전력공사(성동지점)에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청인 세무서장(성동)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사로, 한국전력공사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지장전주를 이설하고, 청구·수령한 이설 비용에 대해 부과한 부가가치세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서,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심사 청구

6)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296, 2013.05.06.)에서는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 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을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 등의 이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음

7) 판례에 따르면(2018.12.19. 선고 2017가합9598) 원고(평택시)는 2017.07.06. 피고(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지장전주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2017.07.06.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660,837,560원을 반환

지장전주 322본의 지장물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면서 당해 물건의 소유자(관리자)인 ○○○○○사(○○지사)가 부가가치세(62,183,575원)를 포함하여 청구한 금액 총 983,468,230원을 그대로 지급하였는데도, 20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지장물 이설공사비 중 부가가치세 지급 부적정 현황(2018년 2월 ~ 2023년 1월)

(단위 : 원)

사업 건수	이설 지장전주 현황		이설공사비(지급금액)			지급기간	비 고
	내역 (본)	소유자 (관리기관)	계	공사비	부가세		
29	322	○○○○○사 ○○지사	983,468,230	876,284,655	62,183,575	2018. 2. ~ 2023. 1.	금전채권 소멸시효 : 5년 (「지방재정법」 제82조)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지장물 이전 비용 지급 시 ○○○○○사(○○지사)에 부가가치세 62,183,575원을 그대로 지급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해남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해남군수는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지장물 이전에 필요한 비용 지급 시 과다 지급한 부가가치세 62,183,575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생 략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공사 구간 내 사용 협의 없이 국·공유지 무단 훼손

관계기관(부서) 해남군(안전교통과, 건설도시과)

훈 계 대 상 자 해남군 ○○○○과 지방○○사무관 ○○○

내 용

1. 업무개요

해남군은 도로이용자 편의 및 집중호우 시 하천 주변의 농경지, 가옥 등의 침수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2020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표 1]과 같이 국·공유지가 포함¹⁾된 도로·하천 등 총 29건의 공사를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다.

[표 1] 국·공유지가 포함된 도로·하천 등 공사 추진 현황(2020년 2월 ~ 2023년 1월)

사업 건수	도 로		하 천		기 타	
	사업내용	건수	사업내용	건수	사업내용	건수
29	도시계획도로, 군도 등	21	소하천 정비 등	8	-	-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사무관 ○○○는 2021. 0. 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하천공사 등을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1) 사업의 특성상 국·공유지가 편입되는 도로, 하천 등의 사업 위주로 추진 현황을 파악

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
를 거친 인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
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
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5조 제3항 및 제9항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
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
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도로법」 제38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 도로공사로 새로 공공시설²⁾
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
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
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
함된 도로공사를 하려면 미리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³⁾을 듣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소하천정비법」 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의2, 「국토계획법」 제65조에
따르면 관리청은 5년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을 수
립하여야 하고,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거쳐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
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제88조에 따른 실
시계획의 인가 등 16개 개별 법령에서 정한 허가·인가·면허·승인·신고·결정·협
의 또는 지정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위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공고한 경우에는 인·허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함(도로·공원·철도·수도 등)

3)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하천은 국토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 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봄

가등에 관하여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국유재산법」 제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도로, 소하천 등에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구간 내 편입되는 국·공유지 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 관리기관의 의견대로 유상 매입 또는 무상귀속을 하거나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등을 득하고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남군(안전교통과, 건설도시과)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도로 및 하천 공사를 추진하면서 ○○ ○○○ ○○○ 정비공사 등 29건의 공사가 [표 2] 및 [별표] “도로·하천 등 공사 구간 내 편입 국·공유지 미협의 세부 명세(2020년 2월 ~ 2023년 1월)”와 같이 국·공유지 263필지 181,063㎡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기관⁴⁾과의 사전 무상귀속에 대한 의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시행하여 2023. 3. 10. 감사일 현재 최소 1개월에서 최대 4년 5개월 동안 국·공유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

[표 2] 도로·하천 등 공사 구간 내 편입 국·공유지 미협의 현황(2020년 2월 ~ 2023년 1월)

(단위 : ㎡)

사업 건수	국·공유지 편입 현황		협의 완료		미 협의		무단 훼손 사용 기간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29건	263	181,063	-	-	263	181,063	1개월 ~ 4년 5개월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4)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관청 및 전라남도 등

관계기관 의견 해남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해남군수는

- ① 공사 구간 내 국·공유지 사용 협의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사무관 ○○○
를 훈계하고(훈계)
- ② 공사 구간 내 무단 사용 중인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7조 등
에 따라 관리기관과 무상귀속 등의 협의를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시
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생 략

전라남도 개선요구

제 목 업무대행건축사 운영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해남군(건축허가과)

내 용

1. 업무개요

해남군은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건축법」 및 「해남군 건축 조례」에 따라 [표 1]과 같이 해남군 건축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총 245회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표 1] 해남군 업무대행건축사 운영 현황

(단위: 회)

구분	계	2021. 7. 9. ~ 2021. 12. 31.	2022. 1. 1. ~ 2022. 12. 31.	2023. 1. 1. ~ 2023. 1. 31.
계	245	93	139	13
사용승인	244	93	139	12
임시사용승인	1	0	0	1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축법」 제27조에 따르면 허가권자¹⁾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²⁾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

1) 해당 허가 등에 대한 권한을 갖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이하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의 명부를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관리해야 하고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허가권자는 위의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전라남도(건축개발과)는 업무대행건축사를 모집 공고하여 명부³⁾를 작성하고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시 반드시 해당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중에서 선정하도록 허가권자에게 안내 공문을 5차례⁴⁾ 발송하였다.

한편 「해남군 건축 조례」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를 제외한 건축사 중 군수가 선정하여 지정된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에 위배된다.

따라서 해남군은 2021. 7. 9.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적합하도록 「해남군 건축 조례」를 개정하여 전라남도지사가 작성·관리하는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해남군(건축허가과)은 「해남군 건축 조례」를 두차례⁵⁾ 일부개정하면서 2021. 1. 8. 일부개정 공포된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았고, 20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해남군 건축 조례」 제18조를 개정하지 않고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지사가 작성·관리하는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건축사 총 3명을 [표 2]와 같이 총 5회 사용승인 업무대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3) 332명(2021. 0. 0. ~ 2022. 0. 0.), 349명(2022. 0. 0. ~ 2023. 0. 0.)

4) 건축개발과-00000(2021. 0. 00.), 건축개발과-00000(2021. 0. 00.), 건축개발과-00000(2021. 00. 00.), 건축개발과-00000(2022. 0. 0.), 건축개발과-00000(2022. 0. 00.)

5) 제3055호 2021. 9. 15. 일부개정, 제3132호 2022. 4. 15. 일부개정

행건축사로 지정하였다.

[표 2] 해남군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위반 현황

(단위: 회)

연번	전라남도 작성·관리 목록 외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건축사사무소 명	건축사	계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계			5	5	0
1	○○건축사사무소	○○○	2	2	-
2	○○○건축사사무소	○○○	2	2	-
3	○건축사사무소	○○○	1	1	-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해남군은 관계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건축사사무소 ○○○ 등 3명에게 총 5건을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함으로써 부적격자가 업무를 대행하여 해남군 건축행정을 신뢰하지 못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해남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해남군수는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를 도지사가 작성·관리하는 명부에서 지정하도록 「해남군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 앞으로 전라남도지사가 작성·관리하는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를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법령상 개선)

전라남도 훈계요구

제 목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해남군(산림공원과)

훈 계 대 상 자 해남군 ○○과 지방○○주사보 ○○○

내 용

1. 업무개요

해남군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억원 이상 공사 618건을 발주하여 준공 또는 공사 중에 있다.

지방○○주사보 ○○○는 2019. 0. 0.부터 2020. 0. 00.까지 ○○○○과에서 2020년 ○○○○ ○○○○사업(○○○○지구) 및 2020년 ○○○○○ ○○사업(○○○○지구)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문화재보호법」 제12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와 「전라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제25조에 따르면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안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¹⁾으로 지정하고, 그 안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문화재보존에 영향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²⁾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공사를 시행할 경우 사전에 문화재보존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관련부서와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벗어난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해남군(산림공원과)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표]와 같이 2020년 ○○○○ ○○○○사업(○○○○지구) 등 2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대상지가 명승(해남 ○○○ ○○○ 일원) 등 2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인데도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및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문화재 보존영향 검토·협의 대상 지역)

가. 국가 지정 문화재

- 주거·상업·공업 지역 :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200m까지의 지역
-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지역 :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m까지의 지역

나. 도 지정 문화재

- 주거·상업·공업 지역 :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200m까지의 지역
-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지역 :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300m까지의 지역

2) 1.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나.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포획·채취·사육·도살하는 행위, 인공으로 증식·복제하는 행위, 자연에 방사하는 행위 등

다.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땅파기·구멍뚫기, 땅깍기, 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등

2. 국가지정문화재(동산 제외)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 행위,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나.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다.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3.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 등

[표]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및 현상변경 허가 미이행 공사 현황

연 번	문화재명	사업명 (사업기간)	위치	문화재 이격거리	사업 추진부서
계	2개	2건			1개 부서
1	해남 ○○○ ○○○ 일원 (○○)	2020년 ○○○○ ○○○○사업(○○ ○○지구)(2020.00.00.~2020.00.00.)	○○면 ○○리 산 000	연접	○○○○과
2	해남 ○○○ ○○ (○○○○문화재)	2020년 ○○○○○ ○○사업(○○○○ 지구)(2020.00.00.~2020.00.00.)	○○면 ○○리 산 00-0	362m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공사 시행에 따른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해남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해남군수는

- ①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및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공사를 시행한 지방○○주사보 ○○○를 훈계하고(훈계)
- ② 앞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및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개발행위 사후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해남군(건축허가과)

훈 계 대 상 자 해남군 ○○○○과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개요

해남군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단독주택 부지 조성 등 6,046건의 개발행위 허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주사 ○○○은 2022. 00. 00.부터 2023. 0. 00.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개발행위 사후관리 업무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 개발행위 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행정조치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내에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허가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사업 기간 내에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허가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기간 내에 연장이 되도록 미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해남군(건축허가과)은 20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별표 1] “개발 행위 허가기간 경과 명세”와 같이 개발행위 허가기간이 만료된 ○○○ ○○○○ ○○조성 등 총 38건에 대하여 짧게는 10일에서 길게는 958일이 경과 되었는데도 의견 청취 및 허가 취소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3. 개발행위허가 관련 이행보증금 보증기간 경과 등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60조 및 제1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는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행보증금 보증기한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보증기한을 연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해남군(건축허가과)은 20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별표 2] “개발 행위 허가 관련 이행보증증권 보증기간 경과 명세”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시 제출된 이행보증증권 중 총 2건(372,288천원)의 보증기한이 만료되어 짧게는 170일에서 길게는 295일이 경과 되었는데도 이를 연장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사 현장의 장기간 방치로 인한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해남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해남군수는

- ① 개발행위 사후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지방○○주사 ○○○을 훈계하고(훈계)
- ② 개발행위 허가기간이 경과된 38건에 대해서는 허가기간 연장 또는 취소 등 행정 조치하고, 이행보증금 보증기한 경과된 2건 372,288천원에 대해서는 보증기한을 연장하여 재예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2] 생 략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옥외광고물 사후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해남군(건설도시과)

훈 계 대 상 자 해남군 ○○○○과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개요

해남군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옥외광고물 총 161건의 허가·신고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주사 ○○○은 2021. 0. 0.부터 2022. 00. 00.까지 ○○○○과에서 2022. 00. 00.부터 2023. 0. 00.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옥외광고물 사후관리 업무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광고물 설치허가 등을 받은 광고물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연장허가 등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제10조 및 제10조의3에 따르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광고물 관리자 등에게 해당 광고물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고, 조치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리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표시기간 연장 신청 대상 광고물 관리자 등에게 표시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 연장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표시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관리자 등에게는 시정명령을 하며,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해남군(건설도시과)은 2023. 3. 10. 감사일 현재 [별표] “해남군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경과 명세”와 같이 표시기간이 만료된 758건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종료를 공문으로 총 8회¹⁾ 안내하였고, 표시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관리자에게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등을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해남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해남군수는

- ① 옥외광고물 사후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지방○○주사 ○○○을 훈계하고(훈계)
- ②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관리자 등에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시정)

1) 안전도시과-00000(2021. 00. 00.), 안전도시과-0000(2022. 0. 00.), 안전도시과-0000(2022. 0. 00.), 안전도시과-0000(2022. 0. 0.), 안전도시과-00000(2022. 0. 00.), 안전도시과-00000(2022. 0. 00.), 안전도시과-00000(2022. 0. 00.), 안전도시과-000(2023. 0. 0.)

[별표] 생 략

전라남도

훈계·시정·주의요구

제 목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해남군(건설도시과)

훈 계 대 상 자 해남군 ○○○○과 지방○○서기 ○○○

내 용

1. 업무개요

해남군은 농업생산기반시설¹⁾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친환경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별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명세”와 같이 해남 ○○○○ ○○○○ 사업 등 45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다.

지방○○서기 ○○○은 2021. 0. 0.부터 20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점검 등의 업무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부적정

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미이행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²⁾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하고, 농업생산기

1)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방조제, 제방 등

2)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경지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 및 준설사업은 시·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승인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시행계획 수립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하고, 승인받은 사업을 변경할 때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전라남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남군(건설도시과)은 20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표 1]과 같이 해남 ○○지구 ○○○○○○ 확포장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시행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완료하였고, ○○ ○○지구 ○○○○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후 공사 시행하면서 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완료하였다.

[표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미승인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비		사업기간		시행계획 승인 여부	시행계획 변경 승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16건			-	-	미승인 14건	미승인 2건
1	해남 ○○지구 ○○○○○○○ 확포장사업	70,500	70,500	2021.00.00.~ 2021.00.00.	2021.00.00.~ 2021.00.00.	부	-
2	○○ ○○지구 ○○○○○○○ 확포장사업	84,000	84,000	2021.00.00.~ 2021.00.00.	2021.00.00.~ 2021.00.00.	부	-
3	○○ ○○지구 ○○○○○○○ 확포장사업	99,500	99,500	2021.00.00.~ 2021.00.00.	2021.00.00.~ 2021.00.00.	부	-
4	○○ ○○지구 ○○○○○○○ 확포장사업	373,600	373,600	2021.00.00.~ 2021.00.00.	2021.00.00.~ 2021.00.00.	부	-
5	○○ ○○지구 ○○○○○○○ 확포장사업	75,300	75,300	2021.00.00.~ 2021.00.00.	2021.00.00.~ 2021.00.00.	부	-
6	○○ ○○지구 ○○○○○○○ 확포장공사	122,680	122,680	2022.00.00.~ 2022.00.00.	2022.00.00.~ 2022.00.00.	부	-
7	○○ ○○지구 ○○○○○○○ 확포장공사	113,670	113,670	2022.00.00.~ 2022.00.00.	2022.00.00.~ 2022.00.00.	부	-

8	○○ ○○지구 ○○○○○○○ 확포장공사	33,500	33,500	2022.00.00.~ 2022.00.00.	2022.00.00.~ 2022.00.00.	부	-
9	○○ ○○지구 ○○○○○○○ 확포장공사	71,000	71,000	2022.00.00.~ 2022.00.00.	2022.00.00.~ 2022.00.00.	부	-
10	○○ ○○ ○○○○○○○ 확포장공사	121,340	121,340	2022.00.00.~ 2022.00.00.	2022.00.00.~ 2022.00.00.	부	-
11	○○ ○○지구 ○○○○○○○ 확포장공사	25,470	25,470	2022.00.00.~ 2022.00.00.	2022.00.00.~ 2022.00.00.	부	-
12	○○ ○○지구 ○○○○○○○ 확포장공사	94,800	94,800	2022.00.00.~ 2022.00.00.	2022.00.00.~ 2022.00.00.	부	-
13	○○ ○○지구 ○○○○○○○ 확포장공사	114,090	114,090	2022.00.00.~ 2022.00.00.	2022.00.00.~ 2022.00.00.	부	-
14	○○ ○○지구 ○○○○○○○ 확포장공사	22,500	22,500	2022.00.00.~ 2023.00.00.	2022.00.00.~ 2023.00.00.	부	-
15	○○ ○○지구 ○○시설 ○○○사업	747,500	665,566	2022.00.00.~ 2023.00.00.	2022.00.00.~ 2023.00.00.	2022.00.00.	부
16	○○ ○○○ ○○○ 보강개발사업	2,015,607	2,094,394	2021.00.00.~ 2023.00.00.	2021.00.00.~ 2023.00.00.	2021.00.00.	부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사업의 적정성 및 경제성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설계변경 및 준공 정산 부적정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6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접수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계약대로 시공이 되었는지를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으로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남군(건설도시과)은 20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표 2]와 같이 ○○ ○○지구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시공 소홀 및 미시공한 20,733천원을 회수하지 않고 사업을 완료하여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2] 건설공사 미시공 공정에 대한 미회수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공사명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대표자)	공사비	지적내용	금액	조치 내용
계	6건			2,773,307		20,733	
1	○○ ○○지구 ○○○정비사업	2020.00.00.~ 2022.00.00.	(유)○○○○ ○○○	1,245,046	- 구조물 되메우기다짐 정산 (콤팩터 미시공) - 철근시공상세도 미작성	7,572	회수
2	○○ ○○제 ○○공사	2021.00.00.~ 2022.00.00.	○○○○○○ (○○○)	443,51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 그라우팅 정산 (주입관리측정장치 미설치)	3,813	회수
3	○○ ○○0제 ○○공사	2021.00.00.~ 2022.00.00.	(주)○○○○ (○○○)	304,274	- 그라우팅 정산 (주입관리측정장치 미설치)	2,545	회수
4	○○ ○○0제 ○○공사	2022.00.00.~ 2022.00.00.	○○○○(주) (○○○)	213,130	- 그라우팅 정산 (주입관리측정장치 미설치)	1,889	회수

연번	공사명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대표자)	공사비	지적내용	금액	조치 내용
5	○○ ○○0제 ○○공사	2021.00.00.~ 2022.00.00.	○○○○(주) (○○○)	263,583	- 그라우팅 정산 (주입관리측정장치 미설치)	2,127	회수
6	○○ ○○0지구 ○○시설 ○○○사업	2021.00.00.~ 2021.00.00.	○○○○(유) (○○○)	303,764	- 사토운반 정산 - 강관 비계 미설치 - 그라우팅 정산 (주입관리측정장치 미설치)	2,787	회수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① (유)○○○○(대표이사 ○○○)이 2020. 00. 0.부터 2022. 00. 00.까지 시공
한 ○○ ○○0지구 ○○○○○사업(1,245,046천원)³⁾에서 콤팩터 미다짐, 철근시공
상세도 미작성, 보조기층 다짐 등을 실시하지 않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는데
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공사비 7,572천원을 과다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았다.

② ○○○○○○(대표이사 ○○○)이 2021. 00. 0.부터 2022. 0. 00.까지 시공
한 ○○ ○○○ ○○공사(443,510천원)⁴⁾에서 그라우팅 공정 중 주입관리측정장
치 설치 등을 실시하지 않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
여 공사비 3,813천원을 과다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았다.

③ (주)○○○○(대표이사 ○○○)이 2021. 00. 00.부터 2022. 0. 00.까지 시공
한 ○○ ○○0제 ○○공사(304,274천원)⁵⁾에서 그라우팅 공정 중 주입관리측정장
치 설치 등을 실시하지 않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
여 공사비 2,545천원을 과다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았다.

④ ○○○○(주)(대표이사 ○○○)가 2022. 0. 00.부터 2022. 0. 00.까지 시공한
○○ ○○0제 ○○공사(213,130천원)⁶⁾에서 그라우팅 공정 중 주입관리측정장치
설치 등을 실시하지 않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공사비 1,889천원을 과다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았다.

⑤ ○○○○(주)(대표이사 ○○○)가 2021. 00. 00.부터 2022. 0. 00.까지 시공
한 ○○ ○○0제 ○○공사(263,583천원)⁷⁾에서 그라우팅 공정 중 주입관리측정장

3) 사업규모 : 개거 L=2,655m 및 농로 포장 L=3,181m

4) 사업규모 : 사석 고르기 1,583m³, 그라우팅 149m 등 저수지 보수 1식

5) 사업규모 : 그라우팅 120m 등 저수지 보수 1식

6) 사업규모 : 그라우팅 89m 등 저수지 보수 1식

치 설치 등을 실시하지 않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공사비 2,127천원을 과다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았다.

⑥ ○○○○(유)(대표이사 ○○○)가 2021. 0. 0.부터 2021. 0. 0.까지 시공한 ○○ ○○○지구 ○○시설 ○○○사업(303,764천원)⁸⁾에서 사토운반 정산 등을 실시하지 않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공사비 2,787천원을 과다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았다.

3.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및 안전점검 추진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며, 그 대상시설 및 실시 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별표 1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420호) 제3조, 제4조, 제6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시설관리자⁹⁾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시설관리자는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도록 일상적으로 시설을 점검·정비한 후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RIMS)에 등록·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안전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세우고 시행하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운전조작 및 정비, 장애물 제거 등을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영농기 전에는 반드시 실시) 그 결과를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RIMS)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7) 사업규모 : 그라우팅 119m 등 저수지 보수 1식

8) 사업규모 : 사석 고르기 532m², 여수로 설치 25.5m, 그라우팅 97m, 사통 및 복통 재설치 등 저수지 보수 1식

9)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

한편 해남군은 2020년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2020. 0. 00.) 및 2022년 정부 합동감사(2022. 0. 00.)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계획’과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시행계획’을 법령상 계획 수립 주기에 맞게 수립하도록 시정·주의요구 처분을 받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남군(건설도시과)은 20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표 3]과 같이 ‘○○관리 ○○○’에 대해서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 계획 미수립)하였으며, ‘20년도부터 ’23년까지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단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

[표 3]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현황

구분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연도	‘21년 ○○관리 ○○○ 안전관리 추진계획(안) - 2021. 4월 수립 (근거: 건설과-00000호 2021.0.00.)	- 2020년 : 미수립 - 2021년 : 미수립 - 2022년 : 미수립 - 2023년 : 미수립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표 4]와 같이 828개소의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총 5,287회 (55.2%)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정기점검한 4,141회에 대하여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RIMS)에 등록하지 않는 등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표 4] 농업생산기반시설 정기점검 현황

(단위 : 회)

구 분		정기점검 실시			RIMS 관리		비고
		대상	점검	미점검	등록	미등록	
계		9,578	4,291	5,287	150	4,141	
2020년	1분기	786	370	416	-	370	
	2분기	786	332	454	50	282	
	3분기	786	362	424	-	362	
	4분기	786	332	454	-	332	
2021년	1분기	788	346	442	50	296	
	2분기	788	296	492	-	296	

	3분기	788	422	366	-	422	
	4분기	788	371	417	-	371	
2022년	1분기	813	382	431	50	332	
	2분기	813	332	481	-	332	
	3분기	828	364	464	-	364	
	4분기	828	382	446	-	382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보 공유의 활성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해남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해남군수는

- ① '20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및 '22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등에 따른 변경인가 미이행 및 농업생산기반 시설물 정기점검을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지방○○서 기 ○○○를 훈계하고(훈계)
- ②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라 ○○ ○○지구 ○○○○○사업 등 6개 사업에 გადა 지급된 20,733,000원을 회수하시고(시정)
- ③ 앞으로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감독 및 점검·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하수도 정비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해남군(상하수도사업소)

훈 계 대 상 자 해남군 ○○○○○○소 지방○○주사보 ○○○

내 용

1. 업무개요

해남군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2020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표 1]과 같이 ○○ ○○ 공공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5건의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및 공공하수도 등을 관리하고 있다.

[표 1]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비	사업기간	계약상대자 (대표자)	비고
계	15건	45,980			
1	○○ ○○ 공공하수처리장 및 ○○○○ 정비사업	2,519	2019.00.00.~ 2021.00.00.	○○○○(주) (○○○)	
2	○○ ○○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325	2018.00.00.~ 2021.00.00.	○○○○(주) (○○○)	
3	○○ ○○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046	2018.00.00.~ 2021.00.00.	(주)○○○○○○○ (○○○)	
4	○○읍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858	2022.00.00.~ 2023.00.00.	○○○○(주) (○○○)	
5	○○ ○○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222	2020.00.00.~ 2023.00.00.	(유)○○○○○○○○○ (○○○)	
6	○○ ○○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323	2020.00.00.~ 2020.00.00.	(주)○○○○○ (○○○)	
7	○○ ○○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446	2021.00.00.~ 2024.00.00.	(주)○○○○○○○ (○○○)	

연번	사 업 명	사 업 비	사업기간	계약상대자 (대표자)	비고
8	○○ ○○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788	2021.00.00.~ 2023.00.00.	○○○○○○(주) (○○○)	
9	○○ ○○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608	2021.00.00.~ 2023.00.00.	○○○○○○(주) (○○○)	
10	○○ ○○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447	2022.00.00.~ 2024.00.00.	(주)○○○○ (○○○)	
11	○○ ○○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540	2022.00.00.~ 2024.00.00.	○○○○○○(주) (○○○)	
12	○○ ○○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294	2022.00.00.~ 2023.00.00.	○○○○○○(주) (○○○)	
13	○○ ○○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558	2022.00.00.~ 2023.00.00.	○○○○○○(주) (○○○)	
14	○○ ○○ 하수관로 정비사업	2,189	2021.00.00.~ 2023.00.00.	○○○○○○(주) (○○○)	
15	○○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4,817	2021.00.00.~ 2024.00.00.	○○○○○○(주) (○○○)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주사보 ○○○은 2022. 00. 00.부터 20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소에서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 등의 업무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2.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남군(상하수도사업소)은 20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표 2]와 같이 ○○ ○○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시공 소홀, 미시공한 66,268천원을 감액 및 회수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2] 건설공사 미시공 공정에 대한 미회수·미감액 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공사명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대표자)	총공사비 (도급 + 관급)	지적내용	금액	비고
계	5건			14,711,616	감액 45,869, 회수 20,399		
1	2020 ○○ ○○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020.00.00.~ 2023.00.00.	(유)○○○○ ○○○ (○○○)	3,222,466	- 배수설비 터파기 변경 (기계50 : 인력50→70:30) - 다짐 장비 변경 (램머→컴팩터) - 소운반 운반 장비 변경 (경운기→2.5톤 덤프)	28,159	감액
2	2021 ○○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2021.00.00.~ 2023.00.00.	○○○○○(주) (○○○)	4,816,540	- 소운반 운반 장비 변경 (경운기→2.5톤 덤프)	9,340	감액
3	2021 ○○ ○○ 하수관로 정비사업	2021.00.00.~ 2023.00.00.	○○○○○(주) (○○○)	2,189,190	- 소운반 운반 장비 변경 (경운기→2.5톤 덤프)	8,370	감액
4	○○ ○○○ 배수관로 시설공사	2019.00.00.~ 2020.00.00.	○○○○○(주) (○○○)	1,911,420	- 수압시험 및 지장물 보호공 미시행	10,284	회수
5	○○ 지방상수도 ○○○○○ 건축사업	2020.00.00.~ 2022.00.00.	(주)○○ (○○○)	2,572,000	- 수압측정 미시행 및 다짐 장비 정산	10,115	회수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① (유)○○○○○○○○(대표이사 ○○○)이 2020. 0. 00.부터 2023. 0. 00.까지 시공 중인 2020 ○○ ○○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3,222,466천원)¹⁾에서 배수 설비 터파기 변경(장비50:인력50→장비70:인력30) 등을 하지 않아 공사비 28,159천원의 설계변경 감액이 필요한데도 20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감

1) 사업규모 : 하수처리장 90m³/일 및 하수관로 L=2.25km 정비

액을 하지 않고 있다.

② ○○○○○(주)(대표이사 ○○○)가 2021. 0. 00.부터 2023. 0. 00.까지 시공 중인 2021 ○○○ 하수관로 정비사업(4,816,540천원)²⁾에서 소운반 장비(경운기→2.5톤 덤프)를 변경하지 않아 공사비 9,340천원의 설계변경 금액이 필요한데도 20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금액을 하지 않고 있다.

③ ○○○○○(주)(대표이사 ○○○)가 2021. 0. 00.부터 2023. 0. 00.까지 시공 중인 2021 ○○○ 하수관로 정비사업(2,189,190천원)³⁾에서 소운반 장비(경운기→2.5톤 덤프)를 변경하지 않아 공사비 8,370천원의 설계변경 금액이 필요한데도 20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금액을 하지 않고 있다.

④ ○○○○○(주)(대표이사 ○○○)가 2019. 0. 00.부터 2020. 0. 00.까지 시공한 ○○○ 배수관로 시설공사(1,911,420천원)⁴⁾에서 수압시험 정산(25회→23회), 지장물 보호공 미시행분을 정산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공사비 10,284천원을 과다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았다.

⑤ (주)○○(대표이사 ○○○)이 2020. 00. 00.부터 2022. 0. 0.까지 시공한 ○○○ 지방상수도 ○○○○○ 구축사업(2,572,000천원)⁵⁾에서 수압시험 정산(41회→29회), 다짐장비 변경(소형램머→컴팩트) 등을 실시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공사비 10,115천원을 과다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았다.

3.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공평가 미실시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계약금액 2억원 이상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용역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과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그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

2) 사업규모 : 하수관로 L=3.39km 정비

3) 사업규모 : 하수관로 L=7.299km 정비

4) 사업규모 : 배수관로 L=10.38km 정비

5) 사업규모 : 비상관로 L=8.35km 정비

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의 평가 중 기본설계는 해당 기본설계에 관한 실시설계가 준공된 때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실시설계는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공사는 해당 공사가 90%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시공평가 결과를 평가 총괄표에 따라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시공평가를 수행한 경우에는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전라남도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내 발주청에서 시행한 해당 분야의 모든 용역평가 결과 점수를 활용하여 상대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시공평가대상에 해당되는 실시설계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평가 자료를 제출받아 시공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남군(상하수도사업소)은 2023. 3. 10. 감사일 현재 [표 3]과 같이 해남 ○○정수장 정비사업 등 2건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공평가를 적기에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표 3] 건설기술 용역 시공평가 미실시 현황

연번	구 분	용 역 명	용역 준공일	공사 착공일	평가이행 완료일	평가 경과 일수	비고
계		2건	건설공사가 착공된 때부터 6개월 이내				
1	기본 및 실시설계	해남 ○○정수장 정비사업	2020.00.00.	2022.00.00.	2022.00.00.	2022.00.00. (269일)	
2	기본 및 실시설계	○○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019.00.00.	2019.00.00.	2020.00.00.	2021.00.00. (338일)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시공평가를 적기에 이행하지 않아 용역회사가 다른 건설기술용역 입찰 참가 시 시공평가 점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업무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해남군은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표 4]와 같이 공공하수처리시설 50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표 4]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운영 현황

(단위 : m³/일)

시설명	읍·면	개소	처리용량	비고
계		50	14,845	
하수종말처리장 ⁶⁾	해남읍 등 4개 읍	4	10,550	
농어촌마을하수도 ⁷⁾	해남읍 등 14개 읍·면	46	4,295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하수도법」 제15조 및 제65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⁸⁾은 공공하수도⁹⁾의 사용을 개시하려는 경우 그 사용개시 시기, 배수구역 등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하수도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

6)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m³ 이상인 공공하수도

7) 농어촌지역 내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m³ 미만인 공공하수도

8)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하수도법 제18조)

9)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도사용자면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계상하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상수도사용료 고지서에 함께 알려 동시에 징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하수처리용량이 500m³ 미만인 농어촌마을하수도 46개소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를 하고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한편 해남군은 2020년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2020. 0. 00.)에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지 않은 농어촌마을하수도 25개소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도록 시정요구 처분을 받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남군(상하수도사업소)은 20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별표]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운영 명세”와 같이 2020년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 결과 처분받은 농어촌마을하수도 25개소 중 18개소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7개소에 대해서는 사용료 18,882천원을 부과·징수하지 않고 있으며, 신규 상수도 보급지역인 7개소에 사용료 4,833천원을 부과·징수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상수도가 보급되는 지역의 공공하수도 45개소 중 해남읍 등 31개 지역만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여 군민들에게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해남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해남군수는

- ① '20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및 공공하수도 요금 미부과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지방○○주사보 ○○○을 훈계하고(훈계)
- ②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라 2020 ○○ ○○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과다계상된 45,869,000원을 설계변경 감액하시고, ○○ ○○○ 배수관

로 시설공사 등 2개 사업에 과다지급된 20,399,000원을 회수하시고, 미부과된 공
공하수도 사용료 23,715,000원에 대하여 부과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생 략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해양수산사업 및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해남군(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내 용

1. 업무개요

해남군은 어민들의 편익증진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0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별표] “해양수산사업 추진 명세”와 같이 ○○ ○○ ○○○○ 정비사업 등 총 90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다.

2. 해양수산사업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6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접수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계약대로 시공이 되었는지를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으로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남군(해양수산물)은 20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표]와 같이 2020 ○○ ○○ ○○○ ○○공사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시공 소홀 및 미시공한 28,248천원을 회수하지 않고 사업을 완료하여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건설공사 미시공 공정에 대한 미회수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공사명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대표자)	공사비	지적내용	금액	조치 내용
계	3건			1,521,832	회수 28,248		
1	2020 ○○ ○○ ○○○ ○○공사	2020.00.00.~ 2020.00.00.	(주)○○○○○○○ (○○○)	200,240	- 부잔교 이설 미시공	2,696	회수
2	2020 ○○ ○○ ○○○ ○○공사	2020.00.00.~ 2020.00.00.	(주)○○○○○○○ (○○○)	475,250	- 수중패널 보강 공정 중 수중비계 미설치	10,234	회수
3	2020 ○○ ○○ ○○○ ○○공사	2020.00.00.~ 2021.00.00.	○○○○(주) (○○○)	846,342	- 확인보링 미시행(2공)	15,318	회수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① (주)○○○○○○○(대표이사 ○○○)가 2020. 0. 0.부터 2020. 0. 0.까지 시공

한 2020 ○○ ○○ ○○○ ○○공사(200,240천원)¹⁾에서 부잔교 이설(1EA)을 실시하지 않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공사비 2,696천원을 과다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았다.

② (주)○○○○○○(대표이사 ○○○)가 2020. 0. 0.부터 2020. 0. 00.까지 시공한 2020 ○○ ○○○ ○○공사(475,250천원)²⁾에서 수중패널 보강 공정 중 수중비계를 설치하지 않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공사비 10,234천원을 과다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았다.

③ ○○○○(주)(대표이사 ○○○)가 2020. 00. 00.부터 2021. 0. 00.까지 시공한 2020 ○○ ○○ ○○○ ○○공사(846,342천원)³⁾에서 선착장 연장공사 완료 후 확인 보링 2공을 실시하지 않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공사비 15,318천원을 과다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았다.

3.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공유수면을 점·사용하여 부두, 방파제, 준설 및 굴착, 인공구조물을 신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⁵⁾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용·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공유수면을 점·사용하여 부두, 방파제, 준

1) 사업규모 : 선착장 보강공사(L=29m) 등 1식

2) 사업규모 : 임하교 교각 패널 보수 등 1식

3) 사업규모 : 선착장 연장공사(L=80m) 등 1식

4) 바다·바닷가와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수면 또는 수류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

설 및 굴착, 인공구조물을 신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이하 “점용·사용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련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미리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남군(해양수산과)은 20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별표] “해양수산사업 추진 명세”와 같이 ○○ ○○ ○○○○ 정비사업 등 총 90건의 사업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으나, 공사 착수 전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을 단 한차례도 받지 않고 사업을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공원과는 2022년 ○○○○○○사업(해남 ○○ ○○)을 추진하면서 석축 쌓기 설치를 위하여 공유수면(144㎡)을 점·사용 하였는데도 2023. 3. 10. 감사일 현재까지 공유수면 허가부서(해양수산과)와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완료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해남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해남군수는

- ①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라 2020 ○○ ○○ ○○○ ○○공사 등 3개 사업에 과다 지급된 28,248,000원을 회수하시고(시정)
- ② 앞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